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토론회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사)생명의숲,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목차

총론	3
정무위원회	8
기획재정위원회	13
교육위원회	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6
국방위원회	42
행정안전위원회	4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1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64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72
보건복지위원회	75
환경노동위원회	103
국토교통위원회	118

총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1.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의 출구전략을 모색한 재정 규모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액은 604.4조원이다. 2021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8.3% 증가했다. 증가율 8.3%는 지난 2018년 7.1%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증감률이다. 최소한 정상(normal) 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은 아니다.

2016~2022년안 본예산 기준 총지출 금액 (단위: 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안
총지출	386.4	400.5	428.8	469.6	512.3	558	604.4
증감률	2.90%	3.6%	7.1%	9.5%	9.1%	8.9%	8.3%



예산의 확장 및 긴축여부는 절대 액수가 아니라 증감률을 기반으로 봐야 한다. 증감률이 줄어들었다고 긴축은 아니다. 버는 돈(총수입, 548.8조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총지출, 604.9조원) 적자예산이다. 확장 예산은 맞다. 다만, 그 확장의 정도는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올해 재정수지(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 적자폭은 많이 줄어든다. 2021년은 90조원 적자, 2022년에는 56조원 적자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충격지수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대비 -0.9로 음수를 나타낸다. 이는 2021년 올해보다는 긴축적 예산이라는 의미다. 정리하면 2022년 예산안은 슈퍼예산은 아니나 확장적 예산이기는 하다. 다만, 그 확장 추세는 조금 누그러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의 출구전략을 모색한다고 해석가능하다.

2. 분야별 분석: 증가율 1위는 보건 분야(43.7%), 교육(16.8%), 일반지방행정(14.3%) 순

총지출 증가율이 8.3%나 8.3%보다 더 증가한 분야는 평균보다 더 증가한 분야다. 43.7% 증가한 보건 분야가 압도적 1위다. 교육 분야(16.8%)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14.3%)가 그 뒤를 잇는다.

<표> 2022년 각 분야별 증감액, 증감률 (단위: 조원, %)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공공질서및안전	22.3	22.4	0.1	0.3%
과학기술	9.0	9.5	0.5	6.0%
교육	71.2	83.2	12.0	16.8%
교통및물류	21.4	22.4	1.1	5.0%
국방	51.4	53.7	2.3	4.4%
국토및지역개발	5.1	5.1	0.0	-0.9%
농림수산	22.7	23.4	0.8	3.4%
문화및관광	8.5	8.8	0.3	3.9%
보건	14.8	21.3	6.5	43.7%
사회복지	184.9	195.5	10.5	5.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6	30.4	1.7	6.0%
예비비	8.6	5.0	-3.6	-41.9%
일반·지방행정	84.7	96.8	12.1	14.3%
통신	8.4	9.1	0.6	7.5%
통일·외교	5.7	6.0	0.3	5.7%
환경	10.6	11.9	1.3	12.4%
총합계	558.0	604.4	46.4	8.3%

자료 : 2022년 정부 예산안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인 보건 분야 증가율 6.5조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만 3.2조원 증가했다. 이외에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이 1조원 늘었다.(7.6조원 -> 8.6조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증가율 증대는 정책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제·사회적 결과

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청 지원액과 지방정부 지원액은 내국세 규모에 연동되어 저절로 정해진다. 내국세의 20.8%는 교육청에 자동으로 교부되고 내국세의 19.2%는 지방정부에 자동으로 교부된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 분야 예산과 지방행정 분야 예산도 자동으로 늘게 된다. 내년 내국세 수입은 21.4%(242.8조원 → 294.7조원) 증가한다. 내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니 지방교육청 교부금과 지방정부 교부세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각 12조원씩 24조원이 증가한다. 두 개 분야 증가액만 내년 총지출 증가액(46.4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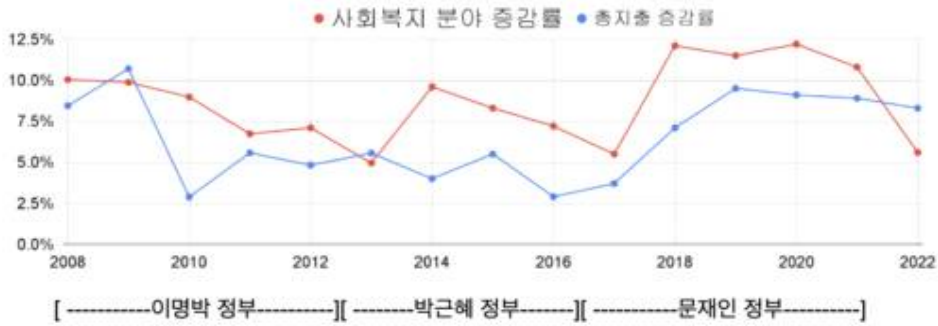
2. 분야별 분석: 증가액 3위는 복지 분야(10.5조원) 증가율 4위는 환경 분야(12.4%)

교육 분야, 일반지방 행정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다. 올해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185조원, 내년엔 195조원이다. 올해보다 10조원(5.7%) 더 지출한다.

첫째 이슈, 내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7%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통틀어 지난 16년간 세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출범했다. 2008년도는 노무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마지막 해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매년 조금씩 낮춰 갔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마지막 해인 2013년도 사회복지 지출 증가액은 4.8%로 최저치를 기록한다.

박근혜 정부는 첫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7.1%로 늘렸다. 기초연금 증대 등 후보 시절 사회복지 지출 증대를 강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 해부터 증가율은 꾸준히 낮아졌다.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2017년 마지막 해 사회복지 지출 증대율은 5.5%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첫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12.1%로 늘렸다. 올해까지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10% 넘게 유지하다가 마지막 해인 2022년 내년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5.7%로 푹 떨어졌다. “선거용 선심성 예산안”이라는 언론 등의 평가는 최소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 만으로는 근거가 없다.



* 2022년도 예산안 사회복지 분야 증감률 5.7%는 13년, 17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증감률. 특히, 총지출 증가율보다도 낮은 것은 13년 이후 처음.

출처: 각 연도별 예산서 (당초 예산, 총지출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 증대 금액이 10조원이다. 어디에 쓰였을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증가액이 3.3조원이다. 정책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인구구조에 따라 저절로 증대된 법적 의무지출이다.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도 1.2조원이다. 기초연금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다. 그리고 용자액 증가가 2.1조원이다. 용자액 증가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기준인 총지출 기준 통계 금액을 과장하는 지출이다.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출생수당, 영아수당 신설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인다. 국민최저선을 지킬 수 있는 기본 복지 제도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2022년도 환경 분야 예산을 분석해보자.

환경 분야 지출액 급증은 전기차, 수소차 때문이다. 환경 분야 지출액은 12% 증대했다. 내국세 증대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이 증대된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로 증대된 분야다. 올해 10.6조원 지출에서 내년도 11.9조원으로 1.3조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전기차 예산과 수소차 예산 두 개 사업 예산 증대액만 1.3조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환경 분야 지출 증대액은 1조3119억원인데 전기차 + 수소차 지출 증대액은 1조2639억원이다. 환경 분야 지출 증대의 거의 대부분(96%)은 전기차, 수소차 지출 증대예산이다.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하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외에도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사업도 좀 더 균형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기차, 수소차의 지나친 편중 현상은 환경 예산의 외피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상 ‘산업 예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내년도에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었다. 기금이 신설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새로운 기금 설치 이유는 기후변화 사업을 수월히 편성하고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총 2.5조원 중, 신설사업은 0.7조원일 뿐이다. 물론 기금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모든 사업을 새롭게 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각각 진행했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신설하여 새로운 재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새로운 사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3. 결론 및 개선방안: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다소 확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있으나 정상(normal) 범위를 벗어나는 슈퍼 예산은 아니다. 오히려 2021년에 비하면 긴축적 예산이다. 공식적 분류체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증감률 기준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다. 보건 분야 예산이 43.7%나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금액 증가가 결정적이다.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두 개 분야 예산 증가액(24조원)이 내년 예산 증가액(46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급증은 정치적 결단도, 국민적 바람도 아니다. 그냥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교육재정과 지방정부 재정 통합을 제안한다.

복지 분야에서 ‘파랑새’ 같은 사업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기본에 충실해지자. 생계급여의 무부양제 폐지, 상병수당 도입과 같은 그동안 필요하다고 수없이 요구되었던 기본 복지 사업이 많다. 이런 기본적인 사업부터 충실히 해나가자.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목표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전기차, 수소차 지출 증대처럼 산업 증진이라는 숨은 목표를 지닌 무늬만 환경 분야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의 트릴레마가 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부채를 줄이면서 지출액을 증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규모를 유지하고자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의 트릴레마는 결국 국민적 합의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민적 합의의 선행조건은 정확한 현실진단이다.

정무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국가보훈처	골프장 시설투자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9
국가보훈처	국내외사적지탐방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11

매각 결정된 군 골프장 시설투자 해야하나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골프장 시설투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정부안
골프장 시설투자	1,294	1,122	1,122	2,580

- 사업내용: 골프장의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신규사업 개발

■ 문제점

- 2021년 국회 정무위 예산안 지적에 따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88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보수 등 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
- 1988년 개정해 33년이 지난 88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으로 국가보훈처가 소유하고 있으며 88관광개발(주)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음. 개장 이후 2020년까지 2,708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해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재원으로 활용함.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어 있으나 보훈기금 수혜자 등의 반대 등에 따라 매각 철회 요청이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예산은 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액된 금액임. 시설투자로는 야간조명시설 교체 15억원, 실외연습장 냉난방기 교체 4억원, 클럽하우스 승강기 설치 2억원, CCTV 교체 1억7천만원 등으로 구성됨
- 88골프장 매각 진행 혹은 철회 등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클럽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2층 시설로 승강기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사업 인지 등 평가가 필요하고, 이용객 안전 등을 고려해 연차별 공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기재정계획에 맞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294	1,122	1,122	1,122	1,122	
'21~'25		1,122	1,122	1,122	1,122	1,122

■ 의견 : 중기재정계획에 맞는 예산 편성

- 매각 예정지에 대한 시설투자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공사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판단이 필요함

질병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조, 보훈처는 사적지 탐방 예산 지원

국가보훈처, 국내외사적지탐방

■ 현황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내외사적지탐방	473	553	553	1,550	525	△28	△5.1

■ 사업내용

- (청소년, 청년 및 교원 등 탐방지원) 국내외보훈사적지탐방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따라 나라사랑 마음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보훈정신 계승발전에 기여

2018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19회 508명 지원
2019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22회 578명 지원
2020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사업추진방식 탐방 웹사이트 구축 추진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4인이하 국내사적지탐방으로 908명 지원
2021	코로나-19관련 비대면 사적지탐방 사업 콘텐츠 강화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4인이하 국내사적지탐방으로 사업 운영

■ 문제점

- 청소년이 학교도 매일 가지 못한 시기에 국가에서 사적지 탐방을 장려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2021년의 비대면 사적지탐방 콘텐츠 강화의 경우, 연례적 예산 편성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 계획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음
- 전년도 예산의 경우 30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의 경우 동 사업에서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예산요구액이 전년도 예산의 3배 가량인 1,550백만원임. 합리적 사업 계획 및 요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1.5.1 2.)	국내외사적지 탐방 3145-403	국외업 무여비 220-02	20	호국보훈의달 행사 3147-412	일반수 용비 210-01	호국보훈의 달 행사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예산 부족에 따라 예산 자체전용

■ 의견

- 시국을 고려하여 예산 삭감 및 필요 시 사업 일몰을 검토해야 함

기획재정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예산 전반	출연금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14
기획재정부	예비비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16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17
예산 전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공공운수노조	24
국세청	근로장려금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29

예산 총액의 8.7%에 달하는데 평가 및 정산 없는 출연금

총괄, 출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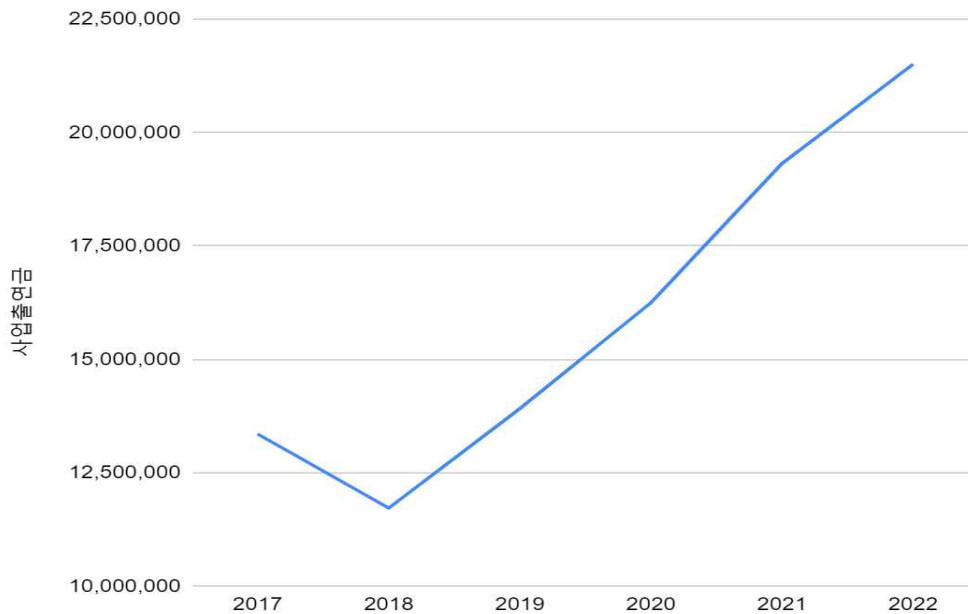
■ 현황

2021~2022년 출연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목명	세목명	2021년 국회확정액	2022년 정부안
총합계		46,329,828	52,552,828
연구개발출연금		23,821,486	27,999,226
	연구개발건축비	339,239	342,875
	연구개발경상경비	349,758	347,813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54,998	387,982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9,000,217	22,799,526
	연구개발인건비	2,009,280	2,088,315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2,067,994	2,032,715
일반출연금		22,508,342	24,553,602
	금융성기금출연금	1,407,858	800,180
	기관운영출연금	2,122,181	2,218,401
	민간기금출연금	32,066	30,385
	사업출연금	18,946,237	21,504,636

최근 6년간 사업출연금 증가 현황



■ 사업내용

-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 출자금, 국고보조금, 재정융자금 등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그 가운데 “출연금”이란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기관·공단 등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함
- 「국가재정법」 제12조1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금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으로 교부받는 금액을 의미함. 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해당 기관은 출연금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사업기간, 반환, 재산 처분의 제한 등 관리를 받는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법적인 정산 의무가 없고 이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 2022년 중앙정부의 출연금 예산은 53조원 규모로, 2022년 세출예산 총액 604조원의 8.69%에 달함. 특히 최근 4년간 사업출연금의 경우 연평균 18%로 급증한 바 있음¹⁾.
- 그럼에도 출연금은 평가·관리·정산 시스템이 부재하여 예산이 자의적으로 책정되고, 배정된 예산이 남아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경비로 쓰이거나 적립금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함

■ 의견 : 평가, 관리, 정산 및 보고 시스템 마련 및 정보 공개

- 출연금에 대한 적절한 평가, 관리, 정산 및 보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출연금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내역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1)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코로나19 핑계 예비비 증액은 이제 그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

■ 현황

- 예비비는 코로나19 이전 3조원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 2022년도는 5조원이 편성되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크게 증가되었음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예비비	550,000	8,600,000	9,700,000	5,000,000	5,000,000

■ 문제점

-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편성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는 것임.
- 코로나19 이후 20년 추경과 21년도 예비비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는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출액을 확대하기 위함임.
-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어떤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없었을 때는 예비비 증액을 통해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나름 필요할 수 있음.
- 반면, 현재는 코로나19관련 지출은 예비비가 아니라 특정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 코로나19 사업을 제외한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해야 할 것임.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정부안	3,000,000	3,3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700,000	5,400,000
국회 수정금액	6,446	-150,000	0	0	0	-300,000	3,200,000
본예산	3,006,446	3,15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400,000	8,600,000

■ 의견 : 일반회계 1% 수준인 3.4조원 정도로 편성

-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2022년 일반회계는 약 348조원으로 이 금액의 1%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적예비비를 통해 1%를 초과하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도 가능한 하나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해당사업에 지출액을 편성하는 것이 좋음.
- 만약 기존 예비비만으로 지출을 초과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의 사업이 있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무늬만 '신설'된 기후대응기금²⁾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 현황

2022년 기후대응기금 세부사업 중 기존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1	2022	2022	전년대비	전년대비
			결산액	당초예산	2차추경예산	예산요구안	정부예산안	증감	증감률
연번	신규사업 여부	세부사업	A	B	C	D	E	E-C	CAGR
합계			924,219	1,411,814	1,411,814	3,146,734	2,456,670	1,044,856	74.0%
기존사업 합계			924,219	1,411,814	1,411,814	2,090,935	1,752,233	340,419	24.1%
신규사업 합계			0	0	0	1,055,799	704,437	704,437	-
1	기존	탄소중립도시숲조성	174,112	233,817	233,817	268,774	268,774	34,957	15.0%
2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7,600	227,600	227,600	400,000	224,501	-3,099	-1.4%
3	기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24,816	51,932	51,932	192,621	122,050	70,118	135.0%
4	기존	친환경설비투자	-	30,000	30,000	100,000	100,000	70,000	233.3%
5	기존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76,665	86,898	86,898	86,898	86,898	0	0.0%
6	기존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14,890	16,055	16,055	79,393	61,260	45,205	281.6%
7	기존	스마트생태공장구축	10,100	30,300	30,300	60,600	60,600	30,300	100.0%
8	기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R&D)	99,973	103,764	103,764	47,316	47,316	-56,448	-54.4%
9	기존	에너지인력양성(R&D)	38,981	45,284	45,284	46,494	46,494	1,210	2.7%
10	기존	녹색융합 기술인재양성	9,440	39,620	39,620	48,475	44,887	5,267	13.3%
11	기존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23,100	25,000	25,000	41,600	41,600	16,600	66.4%
12	기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15,000	26,250	26,250	37,500	37,500	11,250	42.9%
13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조성	754	3,040	3,040	43,950	36,000	32,960	1084.2%
14	기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0	0.0%
15	기존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	12,276	19,147	19,147	29,711	29,711	10,564	55.2%
16	기존	그린뉴딜 유망기업100	-	21,450	21,450	28,950	28,950	7,500	35.0%
17	기존	습지보전관리	15,382	28,546	28,546	40,980	28,568	22	0.1%
18	기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300	11,620	11,620	28,390	28,390	16,770	144.3%
19	기존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	25,367	25,367	44,301	27,587	2,220	8.8%
20	기존	산단내클린팩토리 구축지원	3,100	20,300	20,300	23,600	23,600	3,300	16.3%
21	기존	그린뉴딜 유망기업100(R&D)	-	13,750	13,750	21,250	21,250	7,500	54.5%
22	기존	친환경경제 사회기반구축	9,118	9,930	9,930	26,751	18,994	9,064	91.3%

2) 나라살림연구소, 신설 기후대응기금 사업 분석, 2021. 10. 6.

구분			2020	2021	2021	2022	2022	전년대비	전년대비
			결산액	당초예산	2차추경예산	예산요구안	정부예산안	증감	증감률
연번	신규사업 여부	세부사업	A	B	C	D	E	E-C	CAGR
23	기존	창업성장기술개발(R&D)	-	2,375	2,375	15,613	15,613	13,238	557.4%
24	기존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500	15,000	15,000	14,500	14,500	-500	-3.3%
25	기존	전주기적산업 혁신지원(R&D)	-	10,615	10,615	13,685	13,685	3,070	28.9%
26	기존	다부처대규모CCS 통합실증및CCU 상용화 기반구축(R&D)	-	8,600	8,600	12,350	12,350	3,750	43.6%
27	기존	기후변화협약대응	12,936	11,643	11,643	12,643	12,114	471	4.0%
28	기존	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R&D)	5,270	9,223	9,223	11,562	11,562	2,339	25.4%
29	기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16,000	10,000	10,000	11,000	11,000	1,000	10.0%
30	기존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 발(R&D)	4,000	11,500	11,500	11,000	11,000	-500	-4.3%
31	기존	제철공정내CO2 회수활용기술개발(R&D)	-	5,803	5,803	10,848	10,848	5,045	86.9%
32	기존	대기환경관리기술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R&D)	-	15,210	15,210	10,599	10,599	-4,611	-30.3%
33	기존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11,767	14,100	14,100	10,400	10,400	-3,700	-26.2%
34	기존	친환경선박 혼합연료기술개발및 실증(R&D)	-	7,250	7,250	9,110	9,110	1,860	25.7%
35	기존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9,117	11,097	11,097	9,032	9,032	-2,065	-18.6%
36	기존	사업재편지원 기반구축	1,671	4,002	4,002	18,000	8,894	4,892	122.2%
37	기존	수소버스안전성평가기술및장비개발(R&D)	6,000	9,000	9,000	8,644	8,644	-356	-4.0%
38	기존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어선 개발연구(R&D)	-	6,045	6,045	8,284	8,284	2,239	37.0%
39	기존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3,424	7,082	7,082	7,971	7,971	889	12.6%
40	기존	제조업활력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저 감형 재제조기술개발(R&D)	5,900	9,010	9,010	7,880	7,880	-1,130	-12.5%
41	기존	미래수소 원천기술개발	-	3,300	3,300	7,600	7,600	4,300	130.3%
42	기존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960	4,685	4,685	10,564	7,203	2,518	53.7%
43	기존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4,022	6,975	6,975	7,725	7,175	200	2.9%
44	기존	저탄소에너지 고효율건축기술 개발(R&D)	4,000	11,480	11,480	7,027	7,027	-4,453	-38.8%
45	기존	석유코크스활용수소생산실용화기술개발 (R&D) (-	6,000	6,000	6,946	6,946	946	15.8%
46	기존	청정생산기반산업 공생기술개발사업(R&D)	3,190	9,088	9,088	6,593	6,593	-2,495	-27.5%
47	기존	온실가스저감을위한국토도시 공간계획및관 리기술개발(R&D)	2,816	4,381	4,381	6,546	6,546	2,165	49.4%
48	기존	야생생물유래 친환경경신소재 및공정기술개발 (R&D)	-	7,890	7,890	7,220	6,498	-1,392	-17.6%
49	기존	상용급액체수소플랜트핵심기술개발(R&D)	6,895	9,753	9,753	6,144	6,144	-3,609	-37.0%
50	기존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 연소중CO2포집 활용 기술개발사업(R&D)	2,360	5,136	5,136	5,460	5,460	324	6.3%
51	기존	리튬기반차세대 이차전지성능 고도화및제조 기술개발(R&D)	4,677	4,911	4,911	5,316	5,316	405	8.2%
52	기존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업종 전환지원	5,300	6,990	6,990	5,200	5,200	-1,790	-25.6%
53	기존	기술혁신형에너지 강소기업육성(R&D)	1,687	4,668	4,668	5,177	5,177	509	10.9%
54	기존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	2,500	2,500	15,000	5,000	2,500	100.0%
55	기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2,720	3,196	3,196	5,018	4,868	1,672	52.3%

구분			2020	2021	2021	2022	2022	전년대비	전년대비
			결산액	당초예산	2차추경예산	예산요구안	정부예산안	증감	증감률
연번	신규사업 여부	세부사업	A	B	C	D	E	E-C	CAGR
56	기존	수소시범도시 인프라기술개발(R&D)	5,000	5,714	5,714	4,506	4,506	-1,208	-21.1%
57	기존	특수차량노후엔진및 배기장치전자기술연동 재제조기술개발(R&D)	5,800	5,550	5,550	4,489	4,489	-1,061	-19.1%
58	기존	제조분야온실가스 미세먼지동시 저감기술개 발(R&D)	-	4,000	4,000	4,200	4,200	200	5.0%
59	기존	대규모 CCS통합실증 기반구축(해수부)	-	3,120	3,120	4,060	4,060	940	30.1%
60	기존	산업계순환경제 기반구축	-	2,382	2,382	3,992	3,992	1,610	67.6%
61	기존	온실가스감축 제도운영	4,076	3,915	3,915	3,948	3,948	33	0.8%
62	기존	저열화성노후전력 기자재재제조 기술개발 (R&D)	-	3,000	3,000	3,425	3,425	425	14.2%
63	기존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 MRV 관리체계	2,164	100	100	3,176	3,176	3,076	3076.0%
64	기존	EV,ESS사용후 배터리용제품기술개발및실 증(R&D)	-	3,000	3,000	3,861	3,112	112	3.7%
65	기존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 반구축(R&D)	-	3,500	3,500	2,890	2,890	-610	-17.4%
66	기존	첨단제품전후방 산업의순환자원 이용기술개 발(R&D)	4,856	3,905	3,905	2,790	2,790	-1,115	-28.6%
67	기존	공공시설옥상녹화	-	2,930	2,930	2,930	2,750	-180	-6.1%
68	기존	청정제조기반구축(R&D)	1,980	1,980	1,980	2,030	2,030	50	2.5%
69	기존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기 술개발(R&D)	1,000	2,000	2,000	2,000	1,925	-75	-3.8%
70	기존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812	900	900	900	900	0	0.0%
71	기존	목표관리제(건축물)	1,070	946	946	992	811	-135	-14.3%
72	기존	CCS통합실증 및CCU상용화 기반구축(R&D)	-	650	650	620	620	-30	-4.6%
73	기존	해양해운 목표관리제	-	440	440	450	440	0	0.0%
74	기존	목표관리제(건설업)	352.4	370	370	370	370	0	0.0%
75	기존	목표관리제(교통)	384	384	384	695	230	-154	-40.1%
76	기존	산림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150	150	150	150	150	0	0.0%
77	기존	탄소자원화기술 고도화(R&D)	4,300	4,500	4,500	150	150	-4,350	-96.7%
78	기존	탄소자원화범부처 프로젝트(R&D)	456	200	200	100	100	-100	-50.0%

자료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나라살림연구소 가공

2022년 기후대응기금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1	2022	2022	전년대비	전년대비
			결산액	당초예산	2차추경예산	예산요구안	정부예산안	증감	증감률
신규 사업 여부	세부사업		A	B	C	D	E	E-C	CAGR
	합계		924,219	1,411,814	1,411,814	3,146,734	2,456,670	1,044,856	74.0%

구분		2020 결산액	2021 당초예산	2021 2차추경예산	2022 예산요구안	2022 정부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신규 사업 여부	세부사업	A	B	C	D	E	E-C	CAGR
	기존사업 합계	924,219	1,411,814	1,411,814	2,090,935	1,752,233	340,419	24.1%
	신규사업 합계	0	0	0	1,055,799	704,437	704,437	-
신규	산업은행출자 (녹색금융)	-	-	-	300,000	150,000	-	-
신규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	-	-	300,000	150,000	-	-
신규	기후대응보증 (기보출연)	-	-	-	50,000	50,000	-	-
신규	기후대응보증 (신보출연)	-	-	-	50,000	50,000	-	-
신규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R&D)	-	-	-	17,000	17,000	-	-
신규	탄소중립기술 인력양성(폴리텍)	-	-	-	15,000	15,000	-	-
신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	-	-	-	14,250	14,250	-	-
신규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R&D)	-	-	-	14,248	10,435	-	-
신규	CCU 3050(R&D)	-	-	-	9,000	9,000	-	-
신규	그린교정시설 조성	-	-	-	10,980	8,847	-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복원	-	-	-	7,890	7,890	-	-
신규	석유대체친환경 화학기술개발(R&D)	-	-	-	7,500	7,500	-	-
신규	탄소저감형석유계 원료대체화학 공정기술개발사업(R&D)	-	-	-	7,372	7,372	-	-
신규	CO2해양지중저장 상용화핵심기술개발(R&D)	-	-	-	7,200	7,200	-	-
신규	철강분야탄소중립을 위한무탄소연료 전환및에너지 효율향상기술개발(R&D)	-	-	-	7,000	7,000	-	-
신규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 개발사업	-	-	-	7,000	7,000	-	-
신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 기술연구(R&D)	-	-	-	6,983	6,983	-	-
신규	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개발 (R&D)	-	-	-	6,600	6,600	-	-
신규	시장선도형CCU전략제품생산 기술실증(R&D)	-	-	-	6,584	6,584	-	-
신규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	-	-	6,000	6,000	-	-
신규	DNA활용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R&D)	-	-	-	6,000	6,000	-	-
신규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	-	-	8,200	5,800	-	-
신규	노동전환인프라	-	-	-	8,000	5,700	-	-
신규	이산화탄소반응경화 시멘트제조기술(R&D)	-	-	-	5,529	5,529	-	-
신규	탄소순환형정유제품 생산을위한CCU통합공정기술개발(R&D)	-	-	-	5,529	5,529	-	-
신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	-	-	5,450	5,450	-	-
신규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감축 공정기술개발	-	-	-	5,405	5,405	-	-

구분		2020 결산액	2021 당초예산	2021 2차추경예산	2022 예산요구안	2022 정부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신규 사업 여부	세부사업	A	B	C	D	E	E-C	CAGR
	(R&D)							
신규	탄소저감모델연계 디지털엔지니어링 설계기술개발(R&D)	-	-	-	5,345	5,345	-	-
신규	노동전환지원금	-	-	-	7,400	5,260	-	-
신규	페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기술개발(R&D)	-	-	-	6,466	5,200	-	-
신규	사업전환고용 안정협약지원금	-	-	-	5,000	5,000	-	-
신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R&D)	-	-	-	5,000	5,000	-	-
신규	탄소중립그린도시	-	-	-	4,800	4,800	-	-
신규	시멘트원료(석회석) 대체순환자원 확대기술개발(R&D)	-	-	-	4,646	4,646	-	-
신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전환	-	-	-	4,400	4,400	-	-
신규	재생자원의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R&D)	-	-	-	4,285	4,285	-	-
신규	건축물에너지 디지털진단 및 설계(R&D)	-	-	-	4,226	4,226	-	-
신규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 및 기반기술개발(R&D)	-	-	-	4,103	4,103	-	-
신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사업화연계 기술개발(R&D)	-	-	-	6,585	4,000	-	-
신규	화학재생그린 섬유개발(R&D)	-	-	-	3,907	3,907	-	-
신규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R&D)	-	-	-	4,608	3,840	-	-
신규	습지생태계가치평가 및 탄소흡수원 가치증진기술개발(R&D)	-	-	-	7,148	3,700	-	-
신규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기술개발(R&D)	-	-	-	3,663	3,663	-	-
신규	탄소저감형중대형 이차전지혁신 제조기술개발(R&D)	-	-	-	3,600	3,600	-	-
신규	폐자원 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개발(R&D)	-	-	-	3,856	3,600	-	-
신규	국립공원 탄소흡수원구축	-	-	-	22,400	3,500	-	-
신규	RE100기반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기술개발(R&D)	-	-	-	3,842	3,442	-	-
신규	에너지저감공정 촉매재자원화 기술개발(R&D)	-	-	-	3,391	3,391	-	-
신규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 기술개발(R&D)	-	-	-	3,291	3,291	-	-
신규	CCUS상용기술고도화 및 해외저장소확보를 위 한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	-	-	3,200	3,200	-	-
신규	상용급액체수소플랜트용 압축기핵심기술개발및 실증(R&D)	-	-	-	3,073	3,073	-	-

구분		2020 결산액	2021 당초예산	2021 2차추경예산	2022 예산요구안	2022 정부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신규 사업 여부	세부사업	A	B	C	D	E	E-C	CAGR
신규	(혁신도전형)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R&D)	-	-	-	3,000	3,000	-	-
신규	공기액화기반 에너지저장 및 활용시스템기술개발(R&D)	-	-	-	3,000	3,000	-	-
신규	(혁신도전형) 플라즈마 활용 원료고도화 기술개발(R&D)	-	-	-	3,750	3,000	-	-
신규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 기술 개발(R&D)	-	-	-	2,765	2,765	-	-
신규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	-	-	5,130	2,565	-	-
신규	바이오매스 기반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 기술개발(R&D)	-	-	-	3,000	2,000	-	-
신규	인건비	-	-	-	1,312	1,312	-	-
신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구축	-	-	-	4,000	1,241	-	-
신규	공공열분해시설설치	-	-	-	1,500	1,000	-	-
신규	기금운영비	-	-	-	908	908	-	-
신규	환경교육강화	-	-	-	2,419	900	-	-
신규	생태계기후대응	-	-	-	2,060	200	-	-

자료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나라살림연구소 가공

■ 사업내용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2.5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조성함. 기금 조성 및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음 :

- * 기금의 주요재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부과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 등으로 조성.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에 대한 부처(환경·국토부)간 합의를 통해 교통세 세수의 7%를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안정적 확보
- * (부처합의안) (교특) 68%(△5%), (환특) 23%(△2%), (균특) 2%, (기후기금) 7%(순증)
- * 기금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기업·산업 등에 중점 지원. 기업 및 산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0.9조원)과 탄소중립 유망 중소기업, 창업·혁신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인재양성 등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0.8조원)에 적극 지원.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Just Transition, 0.2조원) 및 CCUS 등 탄소중립 핵심 R&D 기술개발에 지원(0.6조원)

■ 문제점

- (기금 신설 취지에 맞는 자원 조성 및 사업 필요)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업이 대다수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감액 편성하기까지 한 이러한 사례는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신설한다는 명분을 무색케 함. 안정적 자원을 위해 기금이나 특별 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실질적 사업 내용과 소관부처의 괴리 문제)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후위기대응사업을 1개 기금사업으로 통합하는 경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들의 소관부처가 바뀌고 집행 주체와 형식적 관리 주체가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후대응기금의 소관부처는 기재부임. 이에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이 진행 해온 및 향후 진행할 사업의 형식적 책임자는 기재부가 되어 실질적 사업 내용과 형식적 책임 주체 간의 괴리가 발생함. 기후대응기금 집행실적 통계가 환경부나 각 부처가 아니라 기재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의 형식적 책임 부서는 기재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정보 단절의 문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연도별 비교 및 모니터링의 문제가 발생함. 기존에 해온 사업이 이름을 바꾸고, 소관이 바뀌면서 해당 사업의 집행 경위 및 연혁 추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춤. 일례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사이트 열린재정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모든 사업을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정보를 제공함. 이는 외부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집행 성과 및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 있음.

■ 의견

- 무늬만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실질적 기후대응기금으로 할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질적 사업 내용과 소관부처의 괴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의 경우 회계구조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 배경과 진행 경위, 집행내역 등이 추적 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일반회계 및 기금

■ 현황

- 관련예산 : 각종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무기계약직) 인건비(상용임금), 출연금, 보조금 등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무기계약직), 자회사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 중앙행정기관 상용임금 현황 :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포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상용임금 포함 세부사업(개)	1,194	1,175	1,175	-	1,145
금액	2,482,282	2,654,898	2,654,898	-	2,816,460

■ 문제점

■ 인건비 인상 기준의 문제로 매년 임금 격차 확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공무원(일반정규직)의 절반 수준

- 공공부문 공무원 평균임금은 공공기관 일반직 48.9%, 공무원 56% 수준에 불과. 민간 100인상 사업체 상용직과 비교하더라도 63.2% 수준에 불과

<공무직 대비 공공부문 내부, 민간 평균임금 비교(2019년 기준)>

구분	공공부문			민간(상용직)	
	공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일반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월평균임금(만원)	302	539	617	478	570
비율(공무직=100)	100	178.5	204.3	158.3	188.5

*공무원 월평균임금은 2020년 기준소득월액 기준(일반직 공무원외 교원, 경찰 등이 모두 포함)

**공무직 임금은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은 알리오, 민간(상용직)은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 **공무원과 비정규직 동일유사한 인건비 인상률 적용으로 임금 격차 확대**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정해지면 이에 준하여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정해지고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이를 상회하는 처우개선을 금지하고 있음. 더구나 공무원과 일반정규직은 승진, 승급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어 매년 자연적으로 임금이 상승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전체 임금 총액이 정해져 있어 전체 임금인상(Base-up)과 맞바꾸어야 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격차 축소 노력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공무원위원회에서 전문가위원이 격차 축소를 위한 처우 개선 예산 편성 건의

국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21.3)

- “근속기간 등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금 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권고

공무직위원회 전문가 인건비 예산 건의서(21.8.)

- “동일 기관 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상회한 수준에서 인건비 예산 등을 편성할 것” 건의

○ **2022년 정부 예산 편성으로 공무원-공무직 임금 격차 234만원 확대**

-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로 예산 편성.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처우개선 명목으로 0.4%의 추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약 1.8%의 처우개선률을 적용*
- *평균적인 수치로 개별적으로 다른 적용률이 적용되었음
- 이를 2019년 기준 평균임금에 적용하면 공무원의 경우 연 90.6만원의 임금인상이 발생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0.4% 추가인상을 반영하더라도 25.3만원의 격차가 추가로 벌어지고, 공무원의 경우 승진(근속 승진 포함), 승급(호봉인상), 근속 연계 수당 증가 등 으로 약 3%의 자연증가분이 평균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234만원의 격차가 추가로 벌어지게 됨
- *9급 입사자의 경우 호봉인상 2.5%, 근속승진 0.5%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공무직 2022년 임금인상과 격차 확대>(단위 : 년, 만원)

항목	1.4% 동일인상	공무직 0.4%추가인상	공무원 자연증가2.6% 반영
공무원	90.6	90.6	284.6
공무직	50.7	65.2	50.7
격차확대	39.8	25.3	233.9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용역자회사 전환 비정규직은 정규직 인상율(1.4%)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처우개선 계획조차 없어 격차가 더욱 벌어짐

- 정부 출연금, 보조금으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부문의 무기계약직 등 노동자의 경우 1.4%의 인상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 2021년 기준 340개 공공기관 중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수는 289개

<사례> (국민연금기금)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 '22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중 : 21년 공통처우개선 무기계약직 1.4% 적용

- 공공기관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의 경우 모회사의 관련 용역사업비에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4~1.8%의 처우개선율은 실질임금 하락을 의미

- 공무원 노동자 1.8~9% 인건비 인상은 2021년 물가 인상 예상치인 2.1%(한국은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을 의미

■ 수당 차별, 법정 수당 미편성

- 공공부문 공무원(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당 차별

- 직무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수당의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지급해야 함에도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수당 차별은 심각한 상황임

- 법원의 차별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법원은 직무와 무관한 임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 **공무직위원회 수당 차별 우선 해결 합의**

- 공무직위원회에서도 노정간 협의를 거쳐 “노.사 합의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일반근로자)에게 일률.보편.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우선하여 차별적 요인이 없도록 개선“ 결정(「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21.8))

○ **수당 차별 개선 없는 2022년 정부 예산**

- 연차 수당 등 법정 수당 개선 사례 확인되지 않음. 가족수당, 상여금 등은 물론이고,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기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수당 항목에 대해서도 차별 해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실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 소요에 못 미치는 예산 편성 사례도 존재

■ **과도하게 분할된 사업비로 인건비 예산 편성**

○ **상용임금의 93.7%가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은 상용임금은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사업 200~299) 또는 사업비(300~799)로 요구
- 2022년 예산 기준 상용임금목 예산 총액의 93.7%가 사업비에 편성

<2022년 예산 중 상용임금목의 경비 구분에 따른 세부 사업 개수와 예산 합계>

구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합계
세부사업	개수	12	328	805	1,145
	비중	1.0	28.6	70.3	100.0
예산합계	백만원	5,336	150,370	2,478,851	2,634,556
	비중	0.2	6.1	93.7	100.0

○ **예산의 변동성은 고용 불안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 공무직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경상적 성격을 가지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편성. 이는 공무직의 상시지속성에 대해 조직 내 근본적 의문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 또한 실제 사업의 조정을 이유로 예산 조정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
-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정원 및 처우에 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같은 부처에서도 유사 업무 인건비 예산이 다수 사업비로 분할(칸막이 예산)

-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사례 참고

■ 의견

○ 공무원과의 절대적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인건비 인상

-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과(자연증가분 포함) 동일한 금액 인상 : 전년대비 7.9% 인상, 1,718억원 증액

* $2,816,460\text{백만원} \times (7.9\% - 1.8\%) = 171,804\text{백만원}$

- 자연증가분 제외 동일한 금액 인상 : 전년대비 2.5% 인상, 197억원 증액

* $2,816,460\text{백만원} \times (2.5\% - 1.8\%) = 19,715\text{백만원}$

○ 공무원/정규직과 수당 차별 해소 예산 편성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공무원 동일 기준으로 편성

직무 관련 수당 차별 해소

○ 법정수당 현실에 맞게 편성

시간외·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장려금은 조세지출이 아니라 재정지출로

국세청, 조세지출, 근로장려금

■ 현황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우리나라 차상위층 복지제도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복지제도임.
- 특히, 2022년 지출액이 4.9조원으로 전년도 4.6조원보다 증가했음.
- 그런데 근로장려금이 현재는 예산지출이 아닌 조세지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출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음.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근로장려금	4,482,600	4,621,600	4,621,600	-	4,871,800

■ 문제점

- 근로장려세제는 다른 조세지출과 달리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징수한 소득세를 국가세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임.
-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소득세 수입 중, 근로장려세제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소득세 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임.
- 즉, 국세청 소득세 징수액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수가 차이가 나는 모순이 발생함.
- 이는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기록해야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기록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위배임.
- 국가의 재정활동을 통해서 실제 소득세를 통해 현금이 유입되고 근로장려금 사업을 통해 현금이 유출이 되는데도 세수입에서 제외하고 총지출에도 제외하여 국가 재정활동의 규모가 감소하는 통계적 착시 효과를 야기함.
- 근로장려세제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지출 정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의견 : 근로장려금을 조세지출에서 제외하고 복지 분야 지출로 분류

-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소득세를 조세지출로 차감하여 소득세 세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국민이 부담한 소득세 납부액 및 징수액과 기획재정부 소득세 세입액수가 불일치가 됨.
- 이에 근로장려금을 조세지출에서 제외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수를 늘리고 국세청이 담당하는 복지 분야 지출로 분류해야 함.

교육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32
교육부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	공공운수노조	34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11조원을 더 지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현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전출되는 항목임. 내국세의 20.79% 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3%는 특별교부금으로 배분됨. (3%가 배분되는 특별교부금 총액의 60%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 30%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10%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배분됨)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보통교부금	52,011,443	51,741,578	57,916,398	62,489,556	62,489,556
국가시책특별교부금	899,836	893,054	1,007,639	1,086,728	1,086,728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49,919	446,527	503,819	543,364	543,36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49,974	148,842	167,940	181,121	181,121

- 사업내용: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교부되는 금액

■ 문제점

- 법에 따라 2022년도 내국세 수입 예상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배분액은 현행법 하에서는 누구도 바꿀 수 없음.
- 2021년도 본예산은 내국세가 줄었다는 이유로 2020년보다 적은 금액이 편성되고 2022년도는 내국세가 늘었다는 이유로 2021년 본예산보다 11조원이나 더 지출하게 됨.
- 즉, 2021년도는 아무도 예산지원을 줄일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어도 예산은 줄게 되었고 2022년도는 아무도 11조원만큼 증대할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어도 그만큼 재정이 늘게 됨.
- 행정적 필요, 국민적 합의, 정치적 결단 등에 따라 예산 지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적 비율이 지출 될 때, 우연히 사회적 최적수준 만큼 공급될 수는 없음.
- 이러한 비효율이 지속되면서도 법대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 의견 :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재정을 통합

-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 선진국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지방 교육을

담당함. 교육청 지출액은 비교적 일정하나 내국세 수입액은 ‘널을 땀’

- 이를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여윳돈을 저축하는데 이것도 비효율을 양산함.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가면서 교육청에 주는 돈을 교육청은 저축해 놓는 것 자체가 비효율임.

이미 지방분권특별법 제12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입법취지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방정부 재정과 지방교육청 재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 실시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 신설

■ 현황

- 예산 신설 요구

■ 문제점

-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종합병원급 이상은 16.3명, 병원급은 43.6명에 달하고 있음. 한국의 병상 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18.6%에 불과함. 한국 간호사들이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
- 한국의 간호사 신규 배출은 충분. 현재 면허 간호사수는 45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수준인 23만 명만 실제 활동을 하고 있음. 활동간호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직과 퇴직이 많기 때문.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 기준 14.4%에 달했고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무려 45.5%나 됨. 이로 인해 간호사 절대 수 뿐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 부족
-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들의 사망률과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로 밝혀졌음.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은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절실한 요구
- 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 필요. 의료법에 인력 기준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음. 최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제안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기준 법제화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찬성하여 성사. 보건복지부도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등급제) 개편 논의를 2022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간호 인력 총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신속한 제도 개선 필요
- 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부터 시범사업 실시 필요. 중증 환자를 주되게 치료하고 있고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 실행 가능한 국립대병원부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줄이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병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함.
- 국립대병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으로 확대된 사례가 교육전담간호사제도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시범 사업 실시 중. 사업 결과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아 민간까지 전면 확대를 검토 중임.

■ 의견

○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을 신설 6,080백만원 편성

- (사업 대상) 국립대병원 10곳, 병원 당 120병상에 한하여 시범 사업 실시
- (지원 기준) 현재 간호등급제 2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은 1등급, 현재 1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은 기준을 1:1.5로 상향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
- (예산 소요) 시범사업을 위해 추가 채용되어야 할 인원은 총 152명. 간호사 1인당 임금 연4천만원 기준 총 필요 예산은 6,080백만원

종별구분	병원명	현재등급	시범사업안	필요인원수
상급종합병원	경북대병원	1	S(1:1.5)	20명
	부산대병원	1	S(1:1.5)	20명
	서울대병원	1	S(1:1.5)	20명
	충북대병원	1	S(1:1.5)	20명
	충남대병원	2	1	12명
	전남대병원	2	1	12명
	전북대병원	2	1	12명
종합병원	강원대병원	1	1(상종기준)	12명
	경상대병원	1	1(상종기준)	12명
	제주대병원	1	1(상종기준)	12명
합계				152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참여연대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참여연대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참여연대	40

재원만 다른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 현황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당초	수정	요구안	정부안
방송통신발전기금	1,310,934	1,441,823	1,441,823	1,390,951	1,390,951
정보통신진흥기금	1,473,460	1,618,497	1,696,497	2,039,232	2,039,232

- 기금 개요

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근거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설치목적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사업범위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인력양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등
수입재원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업자부담금	주파수할당대가
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제점

- 방송통신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개념 구분이 매우 모호한 상황임. 관련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황임. 또한 두 기금의 주요 수입재원이 통신사의 주파수할당대가인 점을 감안할 때 두 기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그동안 예산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양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간 유사·중복성 문제를 개선해오고 있어 기금 간 사업 이관·통합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

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기금 운용 및 사업 관리 비용 또한 이중으로 발생하는 셈임.

- 2020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보고에서도 ICT 4차산업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두 기금의 중복 및 유사성이 높아 기금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와 공동으로 기금통합 TFT를 운영하여 기금통합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는 통과 무산되었고 21대 국회에 해당 법인 재발의된 상황임(변재일 의원 2020.7.8. 발의).

■ 의견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 유사한 성격의 두 기금을 통합하고 기금별 중복 편성되어 있는 사업 등을 조정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재원만 다른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 현황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당초	수정	요구안	정부안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129,513	147,739	147,739	165,024	143,474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85,900	72,150	72,150	71,908	69,908

- 사업내용

-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 데이터 수집·가공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사업'과 '데이터 선도 및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
-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구축·유통을 활성화

■ 문제점

-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세세부사업에는 '빅데이터 센터 운영 및 확충'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센터 육성과 플랫폼 구축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 특히 빅데이터 센터 육성과 관련해서는 요구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지적받음. 관련해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세세부사업에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이 존재하고 있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사업이 분리되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한 케이스임.
- 게다가 두 개의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주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동일한 상황임. 서로 다른 기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동일한 주체가 운영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비효율적임.

■ 의견 : 두 개의 사업을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로 통합

재원만 다른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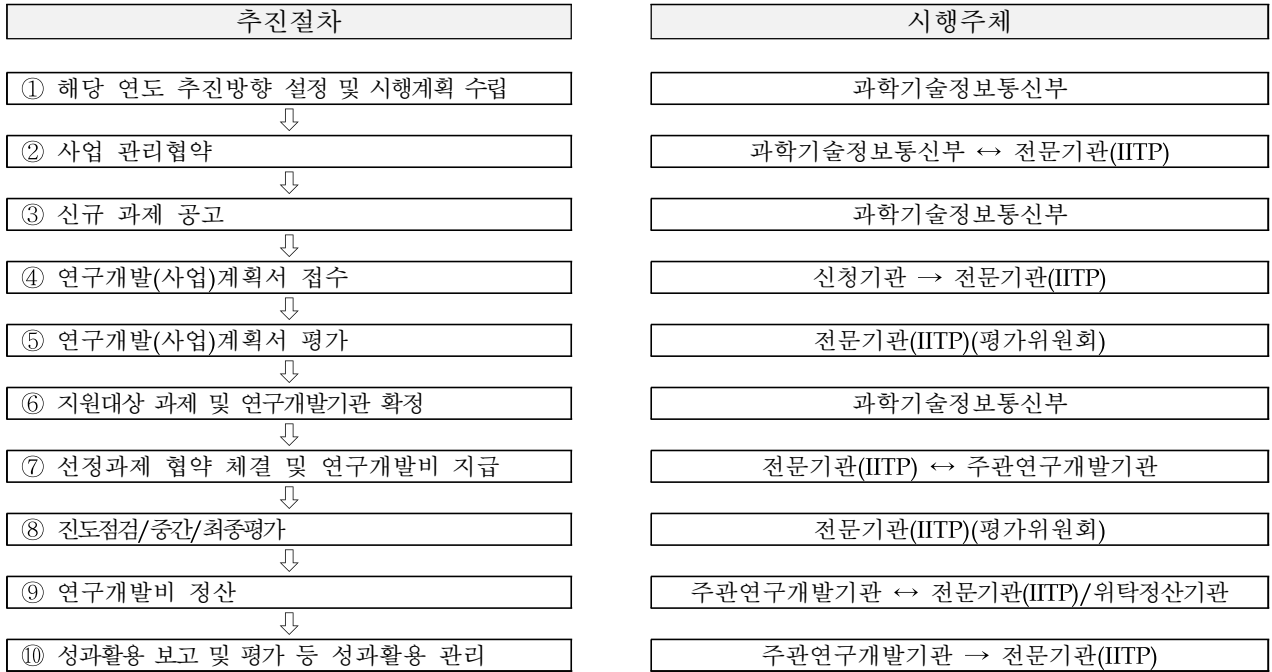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당초	수정	요구안	정부안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1,600	5,100	5,100	8,900	8,000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	2,400	2,400	8,100	5,400

- 사업내용

-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 정부와 대기업이 ICT 기술창업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전주기를 지원
-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 ICT혁신기업이 신시장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T스타트업 대상으로 시장·수요예측 기반 단계별 기술개발 지원

■ 문제점

-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사업은 정부가 R&D자금을 지원하고 멘토기업이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은 ICT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장 수요 최적화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임.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에 멘토기업이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외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
- 게다가 두 사업 모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하며 집행절차 또한 아래와 같이 동일함.



- 특히 두 사업의 지원분야 역시 DNA중심 ICT 분야로 동일하며 지원기간 또한 3년(2년 6개월)으로 동일함.
-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두 개의 재원을 활용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의견 :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국방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국방부	국방부 공무원직 차별(일반회계 다수 예산)	공공운수노조	43

국방부 공무원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국방부, 일반회계, 다수 예산

■ 현황

- 국방부 예산 중 상용임금목이 포함된 사업과 상용임금목 총액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담당 업무	2021년	2022년	
합계				396,854	457,040	
일반회계	시설유지관리	2536-301	시설관리, 청소	110,527	126,962	
	민간조리원운영	1231-305	민간조리원	52,342	80,593	
	장병 복무 적응 지원	2439-30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6,376	26,974	
	부대훈련및지원	2438-301	훈련평가관, 훈련장관리 인원 등	17,304	18,870	
	육군종합정비창 사업 및 지원비	3745-301	정비원, 시설관리	5,433	5,560	
	진료지원	2231-301	환자급식보조원, 외진셔틀버스 기사	4,455	4,691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3735-301	원무, 보안, 청소, 시설	4,460	4,604	
	무관부활동	5135-301	재외 무관부 행정원	4,593	4,575	
	주요기관 기본경비	7111-254	국방부, 국직기관(27개) 각급부대	1,847	2,125	
	보건복지지원	2242-303	성고충전문상담관	1,943	2,089	
	국군대전병원 사업 및 지원비	3740-301	보안,조리,청소	1,821	1,868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3751-301	정보시스템개발유지,시설관리,미화	1,364	1,407	
	부대운영지원	7131-315	육사/해군2함대 세탁원,이미용원 등	560	837	
	군사대학교육	2432-301	국방대, 합동군사대학교 교육 관련	735	749	
	민간보상	7131-30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39	649	
	해군보급창 사업 및 지원비	3733-301	민간조리원,물자정비원,민간하역 등	574	640	
	정훈문화활동	2435-301	교향악단 전문연주인 정산전력 사업 관련	522	534	
	교육정책지원	2438-305	리더십코칭전문관	304	473	
	정책홍보지원	7131-312	대변인실 영상촬영담당자 등	381	428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3753-302	국방TV제작, 시설관리	403	419	
	유해발굴	2439-305	유해발굴 기간제(전문인력) 및 행정지원	333	340	
	공군82정비창 사업 및 지원비	3743-301		275	280	
	전력발전지원	7131-314	군 구조 및 조직/편제 연구	225	231	
	간부양성교육	2431-302	사관교육 관련	200	205	
	국군인쇄창 사업 및 지원비	3731-302	경비, 청소	198	202	
	육군종합보급창 사업 및 지원비	3752-301	시설관리	174	179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138	169	
	지상방위 기본경비	7111-251	민원상담센터	41	113	
	인사정책지원	2439-306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기간제	104	107	
	해군정비창 사업 및 지원비	3750-301	청소, 시설관리	66	67	
	국방홍보원 기본경비	3753-251	사회복무요원	19	23	
	군인복지기금	복지시설운영	2237-641	매점, 복지회관, 체력단련장 등	158,212	169,685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기타이전지원	4232-303	주한미군이전사업단	384	392

■ 문제점

○ 병사 11%, 군인·군무원·공무원 4%, 공무원직은 1.9% 임금 인상

- 2022년 예산에 병봉급 11% 인상(병장 기준, 월 608,500 → 676,100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지원사업(2,191억원) 등 복지사업 대폭 강화
 - 군인·군무원·공무원은 1.4%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이에 호봉 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개인별로는 평균 약 4%의 임금인상이 예정
 - 반면, 국방부 공무원직은 대체로 1.9% 인건비 예산 인상에 그친 것으로 확인 됨. 2022년 국방부 일반회계 예산 37.9조 중 공무원 노동자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상용임금목(110-03) 예산은 약 2,87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가량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증원에 따른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는 작년 대비 1.9% 인상에 그쳤음.
 - 공무원 노동자 1.9% 인건비 인상은 2021년 물가 인상 예상치인 2.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을 의미
 - 낮은 수준의 병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높은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군무원·공무원에 비해 높은 인상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은 임금 인상으로 격차를 확대
 - 결과적으로 군인·군무원·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7,834억원 증가, 상용임금 예산은 487억 증가(인건비 순수 증가분은 약 45억원 수준). 군인 등 보수 증가액의 1%만 사용해도 전년대비 3.3%의 인건비 추가 인상이 가능했을 것
- * $783,377(\text{보수 증액분}) \times 1\% \div 238,256(21\text{년 상용임금목}) = 3.3\%$

<표> 국방부 일반회계 예산 보수목(군인·군무원·공무원)과 상용임금목 증액 현황(백만원)

비목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안	증액
보수(110-01)	14,684,203	15,467,580	783,377
상용임금(110-03)	238,256	286,963	48,707

○ 복리후생 수당 차별 해소, 국가인권위 권고 무시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지급되는 수당 중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하지만 국방부가 올린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명절상여금은 연 80~1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본급의 연120%를 받는 군인·군무원·공무원과 차별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음. 복지포인트 역시 연40만원으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고, 가족수당 등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음

○ **공공부문 용역 기준단가의 75~89% 수준에 불과한 청소, 시설노동자 기본급**

-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관리 관련 용역 계약시 노임단가 기준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국가계약법 제8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 2021년 하반기 각 직종의 기본급에 적용되는 기준 단가는 아래와 같음
- 2022년 국방부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 기본급 기준은 192만원, 222만원임
- 정부가 용역 계약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의 75~89% 수준의 기본급을 직접고용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급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2022년 임금인상을 반영하더라도 77~91% 수준밖에 되지 않음. 시중노임단가가 2022년 기준 또 인상될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유지 또는 확대될 수도 있음

<표>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 기본급과 시중노임단가 비교

직종	'21년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국방부 예산편성기준		격차	
		2021년	2022년	2021년예산	2022년예산
청소	212만원	188만원	192만원	89%	91%
시설관리	289만원	218만원	222만원	75%	77%

* 시설관리는 시중노임단가 기계장치정비원 기준 적용, 참고로 전기전자설비정비원 단가는 300만원, 보일러설치정비원은 275만원임

○ **법정수당 조차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음**

- 국방부 시설유지관리 상용임금 관련 예산의 경우, 연장수당 시간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5~10일 정도 발생하고 있는 연차수당은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일반회계-국방부) 시설유지관리(2536-301) 상용임금목

구분	편성단가
시설 관리	가. 기본급 : 2,221,216원/월 × 12개월 (단, 신규인력은 6개월) 나. 명절상여금 : 500,000원 × 2회 (단, 신규인력은 1회) 다. 급식비 : 140,000원/월 × 12개월 (단, 신규인력은 6개월) 라. 연장수당 : 16,180원/시간 (1인당 약 16.9시간/월씩 편성)
청소	가. 기본급 : 1,919,490원/월 × 12개월 (단, 신규인력은 6개월) 나. 명절상여금 : 500,000원 × 2회 (단, 신규인력은 1회) 다. 급식비 : 140,000원/월 × 12개월 (단, 신규인력은 6개월) 라. 연장수당 : 13,800원/시간 (1인당 약 0.8시간/월씩 편성)

■ 의견

○ 상용임금 인상을 전년대비 2.5% 인상, 2,742백만원 증액

- 공무원 기준임금 인상액 수준으로 인상하여 최소한의 격차 확대를 방지하려면 최소 2.5% 처우개선을 인상 필요
- 국방부의 경우 1.9% 인상을 적용하였으므로 +0.6%의 추가 인상을 반영하면 가능
- 국방부 전체 예산 중 상용임금 예산 총액 457,040백만원*0.6%=2,742백만원

○ 명절상여금 120% 보장

- 일반회계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유지관리(2536-301)로 계산해 볼 경우 5,917백만원 증액 필요, 국방부 전체의 경우 이에 3~4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 * 시설관리 : 2,127명×1인당 명절상여금 증액분(기본급×12%-100만원) 1,665,459원=3,542백만원
- * 청소 : 1,822명×1인당 명절상여금 증액분(기본급×12%-100만원) 1,303,388원=2,374백만원

○ 법정 연차수당 보장

- 최소 5일 이상 연차 보장
- 시설유지관리(2536-301) 예산 관련 노동자 연차수당 5일 보장시 1,858백만원 증액 필요
- * 시설관리 : 2,127명 × 1일 평균임금 104천원 × 5일 = 1,106백만원
- * 청소 : 1,822명 × 1일 평균임금 82천원 × 5일 = 751백만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48
행정안전부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49

역대 연봉의 차관급 대우 받는 유령조직 이북5도위원회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이북5도위원회

■ 현황

- 이북5도위원회는 과거 '미수복'영토에 따라 사실상 '명예 도지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임.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인건비	3,571	3,763	3,763	4,026	3,873
이북5도기본경비(총액)	405	458	458	444	430
이북5도기본경비	3,500	3,455	3,455	3,580	3,369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453	527	527	624	530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506	768	768	697	647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791	1,115	1,115	925	872
합계	9,226	10,086	10,086	10,296	9,721

■ 문제점

- 실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 지역의 도지사과 사무조직을 임명하고 임금과 조직 및 시설 관리비를 지급함.
- 차관급 도지사 5명에 역대 연봉이 지급되나 실제 도지사의 업무는 사실상 없는 명예직일뿐임.
- 연봉이 1억4000만원, 관용차량, 운전비서가 제공되는데 이는 예산 낭비임

■ 의견 : 이북5도위원회 폐지

- 이북5도위원회 폐지
- 만약 현재 유일한 사업인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는 통일부 등 타 부처에서 진행하면 될 것임.

성과 목표는 자의적으로 정한 연수 참가 인원, 시범 마을 개수 달성

팬데믹 시대의 초청연수 예산 증액

행정안전부,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ODA)	2,668	3,230	3,230	4,208	3,648	418	12.9%

■ 사업내용

-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 '20년 기준 45개국 600명 대상 초청연수를 통한 새마을지도자 육성, 항공료 지원
 - (시범마을) '20년 기준 11개국 45개 마을 대상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추진
- 2022년 부처 건의 사항 : “기왕에 항공료를 지원하여 교육하는 만큼 6박7일 이하 과정은 교육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여 초청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지원 필요”

■ 문제점

- 2020년 기준 실적행률이 74.8%에 불과함에도 전년대비 예산액 12.9% 증액 편성
- 성과계획서상 성과 측정 방법이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초청 및 현지연수'의 경우 이수한 인원, '맞춤형 새마을운동 중점육성 시범마을'의 경우 대상 시범마을의 개수이며, 해당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미흡함. 실질적 성과 창출 여부를 알 수 없음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8	3,018	3,018	-	-	-	-	3,018	2,987	99.0	99.0	-	31
2019	3,098	3,098	-	-	-	-	3,098	3,087	99.6	99.6	-	11
2020	3,614	3,593	-	-	-	-	2,729	2,668	74.1	97.7	-	61
2021	3,230	3,230	-	-	-	-	3,230	2,250	69.7	69.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2,901	2,901	2,887	2,887	-	-	2,709	-	192	93.8
2019	2,982	2,982	2,982	2,982	-	-	2,874	-	103	96.4
2020	3164	3,593	2,729	2,729	-	-	2,688	-	61	74.8
2021(7월)	3,230	3,230	2,250	2,250	-	-	2,250	-	-	-

■ 의견

- 실효성 있는 지표를 통한 성과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감염병 우려가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나라살림연구소 박현숙	52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활동지원(I)	종교투명성센터	54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활동지원(II)	종교투명성센터	55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지원	종교투명성센터	5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공무원직 차별	공공운수노조	57

K-컬처 페스티벌 년2회 개최를 통합1회로, 예산은 68%증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예산안	B-A	(B-A)/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33,101	32,148	41,148	49,721	17,573	54.7
(준비단계)해외진출 맞춤형 정보제공	2,996	3,198	3,198	3,428	230	7.2
(진입단계)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22,016	20,847	20,847	37,943	17,096	82
K-컬처 페스티벌	-	5,500	5,500	9,244	3,744	68.1
(성숙단계)수출경쟁력 강화	8144	8,103	17,103	8,350	247	3.3

- 사업내용: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의 내내역 사업임. K-컬처 페스티벌(한국문화축제) 사업은 년2회 상·하반기 개최예정이었으나 22년에는 통합하여 1회만 실시예정이다.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K-Pop 공연, 한류콘텐츠 전시·체험, 포럼 등 축제를 통하여 지속적인 한류붐을 일으키고 국내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년 2회사업을 통합하여 년1회로 개최하면서 2022년 예산안은 2021년 예산 대비 68.1%를 증액하여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임

■ 문제점

- 2021년도 K-컬처 페스티벌(한국문화축제)사업은 모두 온라인과 유튜브, 지상파 방송과 연계하여 상반기 7월, 하반기 10월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11월13일-14일 일산킨텍스에서 개최예정임
- 이러한 K-Pop 공연은 1회성 이벤트라는 측면과 인기방송, 인기 K-Pop 연예인의 팬덤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단기간의 효과와 성과측정의 어려움이 있음.
- 이 사업의 본질은 단기적 한류열풍이 아니라 지속적 효과와 관광사업으로의 연계가 목적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이 3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코로나라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투입 예산 대비 성과 달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행사 예산이 전년대비 68.1%로 대폭 증가함. 특히 홍보비는 2회에서 1회로 행사 횟수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억원(250%)을 증액하였고, 사무국 운영비 또한 8억 4,400만원(281%) 증액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됨

■ 의견 : 지원사업 삭감

- With 코로나19의 환경하에서 2022년에도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과감한 삭감 및 지원축소가 요구됨. 또한 행사의 횟수와 관계없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선순환의 예산안이 요구됨

탄소중립화 예산은 종교와 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종교문화활동지원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종교문화활동 지원	10,770	19,527	19,527	23,072	21,966

■ 문제점

- 정부의 탄소중립화 노력은 이해하나 이에 대한 종교계의 실천 캠페인 지원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종무실의 역할을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음. 만일 이런 관행이 굳어지면 모든 정부 정책의 종교계에 대한 홍보에 종무실이 단순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의견 : 탄소중립 예산은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 있음.

- 종교계에 대한 필요한 탄소중립캠페인은 환경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음.

배타적 종교행사를 제어할 지표도입 시급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종교문화활동지원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종교문화활동 지원	10,770	19,527	19,527	23,072	21,966

■ 문제점

- 대부분의 종교행사는 해당종교만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행사이고, 종교교류도 해당 종교내부의 국제행사일 뿐임. 타종교이해에 대한 예산도 그 효과가 검증이 안 된 행사들 뿐임.
- 이런 문제에 대해 다년간 문제제기가 되었으나 전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 의견 : 종교간 이해증진을 늘릴 예산을 평가할 지표도입이 필요함

- 종교간 대화와 이해증진을 늘리는 행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그 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의 각 항목들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기존의 조정전의 1과 2와 4를 조정후의 4에 모으고 조정후의 1과 2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함.

조정전	조정후
1.국제종교교류협력	1.종교간 대화와 이해증진
2.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2.종교와 사회의 대화와 이해증진
3.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3.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4.종교문화행사지원	4.종교문화행사지원

무분별한 순례길 조성에 대한 재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종교문화시설지원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종교문화시설 지원	6,940	12,411	12,411	9,010	9,010

■ 문제점

- 최근 종교시설의 건립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종교계의 국고지원금 요구도 특정 건물이 아니라 특정 권역의 동적 체험이나 조경강화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 특히 가톨릭이 순례길 조성을 통해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조계종과 개신교도 이런 행태를 답습하고, 지자체의 관광자원화 욕구와 맞물려 유사 순례길이 급증하고 있음.
- 최근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천진암에서 가톨릭의 이런 요구를 받아 추진하려다가 종교간 갈등에 백지화 한 상황임.

■ 의견 : 순례길 예산 집행 전면 보류

- 특정종교가 특정 권역을 종교적으로 인증하는 순례길 조성은 광범위한 종교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 차라리 국고가 투입되는 길을 관광자원화하려면 그 권역에 대한 광범위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합의를 거쳐 복합적인 목적의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해당 부처 또한 종무실이 아닌 관광관련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외 다수

■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관련 예산과 노동자수

정부편성안			
사업명	정원(명)	2021년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331-300)	327	44,199	44,503
미술품수장보존센터운영 (3331-317)	74	8,346	8,382
미술관정보화환경개선 (3331-500)	2	971	1,120
국립현대미술관기본경비 (7118-218)	15	1,028	1,022
국립중앙박물관기본경비 (7118-213)	10	1,274	1,313
국립중앙박물관운영 (2831-300)	312	50,069	56,077
국립지방박물관운영 (2831-301)	408	75,782	66,874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831-500)	2	2,187	1,774
국립민속박물관운영 (3531-300)	122	17,271	17,196
개방형 수장고 정보센터 운영 (3531-311)	29	2,217	2,831
생활민속자료아카이브구축 (3531-500)	2	817	822
국립민속박물관기본경비 (7118-220)	9	381	39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731-303)	223	38,031	37,786
국립도서관운영 (3031-300)	222	29,837	44,065
국립도서관분관운영 (3031-305)	130	14,434	14,953
도서관정보서비스구축운영 (3031-500)	3	29,851	28,313
국립중앙도서관기본경비 (7118-215)	46	1,985	755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32-317)	36	6,442	6,130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24	3,644	3,445
국악중고기본경비 (7118-222)	2	351	344
국립극장운영 (3231-300)	115	28,555	29,161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032-302)	274	62,714	59,759
대한민국역사박물관운영 (3631-301)	83	12,030	11,53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3631-500)	2	456	453
한글박물관운영 (3731-300)	82	15,160	11,714
국립국악원운영 (3431-300)	96	44,216	44,911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 (3431-500)	2	2,025	2,048
국립지방국악원운영 (3431-304)	28	25,056	21,118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133-301)	300	32,669	32,908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4362-306)	16	462	507
계	2,996	552,460	552,213

■ 문제점 I : 칸막이 예산 문제

○ 처우개선 가로막는 ‘칸막이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성 예산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 내에서 다시 세부 사업별로 분할되어 있으며 이 사업비가 기관별로 다시 재분할 편성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 한 직종의 임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사업 중 가장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포함된 몇몇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동결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되는 상황 발생.
- * 예산의 이·전용 제도가 있으나 제도적 제약이 있고 부처의 소극적 운영으로 헌법에 근거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입직 당시 편성된 사업비의 명목이 노동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반영구적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동일한 비목 내에서도 유연한 사용이 가로막혀 기존 예산 항목에 없거나 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상당규모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상황 발생

○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박물관 ‘칸막이 예산’ 사례

<직종별 사업 예산 분포>

사업구분	국립중앙 박물관 운영 (2800-2831)	국립중앙 박물관 운영 (7100-7119)	국립지방 박물관 운영 (2800-2831)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100-2133)		
세부사업	총액인건비 213	기본경비 253	상용임금 301				상용임금 301		
			유물수집 보존조사 연구	전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리얼링	지방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개선	야간 개장	문화가 있는 날 퍼스
직종	시설, 미화, 경비, 주차, 학예, 교육								
	사무	전산 디자인 조리원	안내, 해설			간호사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 분포>

사업구분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지방 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민속 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1)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	○	○		○		○
(2)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					○	
(3) 휴관없는 국립 박물관 · 미술관 운영	○	○		○	○	○	○
(4) 국·공립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						

- 문화체육관광부에는 83개 세부사업 존재. 그 중 예산칸막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업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과 「국립지방박물관 운영」사업,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에 나뉘어 인건비가 묶여있는 직종(시설, 미화, 경비, 주차, 학예, 교육)은 각 사업예산의 구분과 무관하게 교대근무, 동일조편성,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나, 채용당시의 사업명목, 즉 임금이 지급되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직종 임금인상 시에, 3개의 사업에서 모두 예산상 여유가 있어야만 임금인상이 가능하나, 각 사업별로 매 년 증감액이 다르고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의 경우 증감율이 매년 동결에 가깝기 때문에 소속 직종의 인금은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임금인상율이 자동적으로 강제되어 점차 하향평균화 및 최저임금화되고 있음.

- 실제 20년 불용액을 보아도, 위 3개 사업에서 상용임금 내 불용예산이 연 평균 20여억 원 넘게 발생함에도 ‘칸막이 예산’구조로 인해 예산이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 직종이 걸쳐있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 예산이 부족해도 수년 째 비정규직(공무직, 기간제) 임금동결 중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11.09.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년 예산현액	2020년 집행액	불용액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8,998	8,668	330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12,028	11,604	424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운영(정보화)	51	51	0
국립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73	286	-13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야간개장	1,524	-40
	무휴관	1,717	-40
	미정리	4,095	691
관광기금	409	322	87

■ 의견

○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133-301) 사업 예산구조 개편

-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임금 및 수당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비내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통합관리 해야하나, 그 첫걸음으로 가장 심각하게 칸막이문제 및 예산부족 문제가 되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의 기관별 운영사업비로의 통합 편성을 요청함.
- 아래의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 예산구조 개편은 예산총액의 증가 또는 인건비증가의 부담 없이 기존 예산총액 내에서 자체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7개 기관에 쪼개어 배분되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을 실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배분하여 운영 효율화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책임소재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

광부 운영지원과에서조차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구조 개편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133-301) 사업 예산구조 개편안>

사업명	정부편성안		노조 요구
	2021년	2022년	2022년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133-301)			
(1)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18,895	18,896	0
○ 국립박물관 야간개장	2,575	2,621	0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50	352	0
○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492	501	0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간개장	69	71	0
(2)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 국립중앙박물관	2975	3,043	0
○ 국립한글박물관	404	413	0
(3) 휴관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박물관	2,563	2,612	0
○ 국립민속박물관	639	645	0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74	482	0
○ 국립한글박물관	576	583	0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937	1,969	0
(4) 국·공립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 문화시설 1관 1단 지원	600	600	600
○ 국립박물관 주말 문화프로그램 운영	120	120	0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831-300)	50,069	56,077	63,430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2831-301)	75,782	66,874	67,917
국립도서관 운영 (3031-300)	29,837	44,065	63,313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3531-300)	17,271	17,196	17,84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301)	12,030	11,539	12,092
한글박물관 운영 (3731-300)	15,160	11,714	12,710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3331-300)	44,199	44,503	46,973
계	277,017	284,876	284,876

* 타 부처 유사사례 <경찰청 공무원 관리 개선방안(2020.07.08)>

- 경찰청의 경우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청별 자치경찰 대상사무 예산이 지자체의 이관에 대응하여 해당 자치경찰 대상사무에 속한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의 인건비(상용임금)를 경찰청 무기계약직 통합 사업비로 재편하여 운영 중

■ 문제점 II : 명절상여금 차별

- 명절상여금의 경우 정규직(공무원)은 기본급의 60%(연 2회)를 정율로 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액수일뿐더러, 직무급제, 단일임금제 등 자연 호봉상승이 없는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임금인상 및 자연호봉상승이 있는 정규직(공무원) 임금체계 상의 60%라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명절상여금의 격차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움.³⁾
- 실제 문체부 비정규직의 명절상여금은 공무원 9~5급 전체구간 평균 대비 4만원 정도 감소한 셈으로 아직도 316만여원이 차이나, 이 속도라면 직무와 무관한 명절상여금 해소에만 8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의견

- 명절상여금은 20.1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대법 판례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와 상관없이 직무와 무관하게 차별없이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하는 대표적인 직무무관 수당으로,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의 60%를 연 2회 정율로 지급받지만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공무원과 기본급에서 50% 가까운 차이를 보이면서도 40만원 x 2회 (22년 50만원 x 2회) 로 대표적으로 차별지급받는 항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무원 정규직과 차별없이 60%(연2회) 정율로 차별없이 지급하기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사업비 중 공무직 인건비 대응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정부 편성안*		노조 요구	
2021년	2022년	2022년	근거
552,460	552,213	556,407	$\{((\text{평균임금})2 \times 60\%) - ((\text{기존지급})0.5)\} \times 2\text{회} \times 2,996\text{명} = 4,194$

3) [표1] ~[표2] 참조

■ 문제점 III :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차별

- 특수업무수당의 경우, 그 전문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업무의 외주화가 이뤄져 용역업체로 이관되었던 업무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전환된 공무원이 지속수행하고 있음에도 유사동일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만 공무원노동자에게는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수당으로 아래의 세부내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내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나, 공무원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수당항목에 대한 비교표로, 상당한 전문인력이 수당에 있어 차별받고 있음.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업무수당 대상자 세부 내역 (공공운수노조 6개 대표기관 비교)

	업무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한글 박물관	국립 극장	국립 국악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한국예술 종합학교	합계
위험 수당	전기	18	4	6	8	20	20	76
	기계	25	4	6	8	20	20	83
	통신	9				6		15
	영선	4	1			2		7
	소방	4	5			14		23
	보존	10	4	2				16
	건축					7		7
		70	18	14	16	69	40	227
특수 업무 수당	간호	2						2
	사서	3		1	2			6
	학예 연구	50	4	10	9			73
	전산	4				1		5
	무대			30	16			46
	통신					6		6
	의료					3		3
	조경					9		9
		59	4	41	27	19	0	150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기, 기계, 통신, 영선, 소방, 보존, 건축 등의 명시된 위험업무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은 규정에 따른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성상 대민시설이 많고,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대다수는 공무원노동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용지침」에 따라 수당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제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노동자에게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해당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관리업무를 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또한 대 시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간호, 사서, 학예연구, 전산, 무대, 통신,

의료, 조경 등 특정 자격 및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이러한 업무를 직접수행하는 대부분이 공무원노동자임에도 위험수당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노동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의견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자격과 업무의 범위, 성격을 명시한 업무 중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수당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업무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은 사회적 이견없이 해당없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지급되어야 함.

정부 편성안*		노조 요구	
2021년	2022년	2022년	근거
0	0	2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수당 50,000원 × 227명 × 12개월 = 136.2 ○ 특수업무수당 50,000원 × 150명 × 12개월 = 90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관리	환경운동연합	65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환경운동연합	66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환경운동연합	67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구축	환경운동연합	68
산림청	조림	더불어숲	69
산림청	산림복원	더불어숲	70

**해양보호구역 31개소 관리비 정부안 반영 증액,
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예산 신설 필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일반회계, 해양보호구역관리 (1031-301)

■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양보호구역 관리	5,250	5,612	5,612	11,897	9,482

- 사업내용: 해양보호구역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대외협력, 지자체 지원사업

■ **문제점**

-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이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중
- 현재는 국고보조율이 70%이나,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 자원 마련이 쉽지 않음
-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한 관리재원이 부족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고려해야 함

■ **의견 : 해수부 요구안 반영, 해양보호구역 관리비 예산 정부안 반영 증액**

- 해양보호구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구역의 확장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 해양보호구역관리 예산이 30개소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화성 매항리 갯벌을 포함한 31개소 기준으로 관리 예산을 증액해야 함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성과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관리효과성 평가가 필요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정부안 반영 증액,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 및 조사 예산 증액 필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일반회계,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1031-303)

■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8,480	8,696	8,696	10,733	8,904

- 사업내용: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 오염물질 조사, 해양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EEZ 골재채취 관련 수산자원영향조사,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연구

■ 문제점

-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30%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신설해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로 보전할 수 있어, 30x30 캠페인을 진행 중
-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P4G 정상회의 공약, G7 정상회의 공약, Global Ocean Alliance 가입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수요에 따른 관련 목표(전체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등) 달성이 필요함
- 국제협약의 의무 준수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연구의 신설과 비용이 필요하고, 편성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 지정에 그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4개로 확대 및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20%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선 인근에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 해안 해역은 어업 등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붐비기 때문에 덜 유용할 수 있음

■ 의견 : 해수부 요구안 반영,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보지 대상 조사 예산 정부안 반영 증액

-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지정 후보지 대상 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연안선 인근이 아닌, 무인도서 등을 거점으로 한 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

해양보호생물 실태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예산 정부안 반영 증액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수산발전기금,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1065-304)

■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4,490	7,452	7,452	9,897	6,056

- 사업내용: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지자체 지원사업

■ 문제점

-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경우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뿐만 아니라 가로림만에도 서식하고 있으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계획에 대비해 점박이물범을 보호할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가 있으나, 현행 고래고시에서는 해양포유류 폐사 원인을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따라서 해양포유류 폐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음
- 상괭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폐사한 해양보호생물로 경남 고성에 보호구역이 조그맣게 지정되어 있으나,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해양생물인 만큼, 연중 서식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함

■ 의견 : 해수부 요구안 반영, 해양보호생물 실태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예산 증액

- 미국의 동등성평가 대응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함. 현재는 해양포유류 폐사원인을 분석하는 횟수가 20회로 한정되어 있어, 횟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도 필요함
-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서식실태 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상괭이 보호를 위한 연구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황해 상괭이 보전 네트워크 운영 예산 증액이 필요함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예산안 삭감,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예산 증액 필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구축(3150-343)

(단위 : 백만원)

■ 현황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1,759	2,745	2,7452	4,056	1,695

	2020					2021("21.7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	-	-		-	1,063	1,063	1,063	809 [0]		-	-

- 사업내용 : 연근해어업의 대상자원, 어선, 어구 및 제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 문제점

- 최근 5년간 평균 1500여 마리의 고래류가 혼획으로 폐사
- 해양포유류는 주요한 탄소 흡수원일 뿐 아니라,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을 제정해야만 수출이 가능
- 미국 수출에 필요한 동등성 평가는 제도적 해양포유류 보호 뿐 아니라 어구 개선도 반영됨
-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을 위한 예산을 투입했었으나, 2022년 예산은 없어진 상황

■ 의견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예산 증액 필요

-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줄일 수 있는 혼획저감 어구 보급 예산을 복구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해양포유류를 보호 필요
- 해양포유류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시민과 어민의 인식 증진 진행 필요

건강한 숲을 위한 적재적소 나무심기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림(1534-300)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조림	119,267	119,083	119,083	150,296	129,145

- 사업내용:

- ① (경제림조성) 목재·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
- ② (큰나무조림) 가시권 지역의 산림경관조성 및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지 예방
- ③ (지역특화조림) 지역 산림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 숲 조성
- ④ (밀원수림조성)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자원 육성
- ⑤ (산불피해복구조림) '19강원 및 '20울주·안동·고성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 ⑥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단지 경영 모델을 개발·확산
- ⑦ (K-포레스트관건립) VR·AR을 활용한 첨단 산림사업의 체험 및 홍보관 건립

■ 문제점

- 조림 사업은 2019년 이후 매년 추가 달성해 왔음. 현실성 있는 예산 계획 수립 필요
- 21년 탄소중립전략에 따른 사회적 반감, 문제제기에 따라 벌채제도개선(안) 발표 및 벌채량 감소함. 조림 면적은 벌채량과 연관되어 계획되어야 함
-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조성 등 특수성을 고려한 조림 대상지의 모니터링 필요
-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예산 분배액이 선정년도별로 차등됨. 신규개소의 경우 개소당 5억 예산이 편성됨. 예산의 효용성에 대한 판단 필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효과성, 모니터링 필요

■ 의견 사항

-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해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조림 사업 대상지 확보, 효과성 모니터링,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의 효과성 등 검토하여 예산 점검 필요

보다 적극적인 산림복원 정책 추진 필요

산림청 산림보호국, 일반회계, 산림복원(1933-302)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산림복원	19,169	21,282	21,282	36,516	19,710

- 사업내용:

- ① (산림생태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DMZ일원, 도서해안지역 등의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
- ②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산림복원사업 실행 전 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절차로 산림복원의 목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③ (백두대간(정맥) 생태축복원) 백두대간의 상징성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도로개설 등으로 끊어진 백두대간(정맥)의 단절된 생태축(마루금)을 연결하는 사업
- ④ (대규모산림복원)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10ha이상 대규모 훼손지, 방치되거나 특수공법이 필요한 폐광산·채석지 등의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
- ⑤ (백두대간·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 백두대간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맥의 효율적인 관리 정책 수립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백두대간·정맥의 자원실태를 조사하는 사업
- ⑥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림육성, 경관보호 등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입목 벌기령이 지난 산림소유자에게 벌채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임
- ⑦ (백두대간 주민지원)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 등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및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등을 지원
- ⑧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증식시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생산을 위한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국산 자생종자의 증식 및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
- ⑨ (선박용 드론 스테이션) 도서지역 산림보호·복원 및 산림재해대응을 통한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하여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산림복원 전용 선박에 드론 스테이션 설치

■ 문제점

- 산림청의 산림복원 예산은 백두대간, DMZ일원 등 산림생태복원에 사용되고 있음. 이는 기후위기시대에 더욱 중요한 일로 인식됨. 특히 백두대간 보전은 확대 필요. 특히 산림청 예산 중 산림복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함. 이는 중요성에 비해 낮은 예산 편성 비율임.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 백두대간 보전 사업 확대 등 검토 및 이에 따른 증액 필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19,541	21,282	19,710
산림청 예산액	222,580	252,820	236,420
%	8.7	8.4	8.3
			단위: 백만원

■ 의견 사항

- 산림청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10%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보전 예산 증대 필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73

해외 석유자원 개발 투자 지속해야할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정부안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31,082	34,929	34,929	68,844

- 사업내용: 국내외 석유·가스자원 및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기업 대상 용자 사업

■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자원개발기업 용자 사업으로 용자금은 투자액의 30% 안팎임
- 2022년 예산으로 688억원을 편성해 전년 349억원 대비 97% 증액함
-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처 입장이거나 2022년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국내외 유전개발에 679억원을 배정해 대부분을 차지함
-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및 대응 분위기를 감안하여 유전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지 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최근 3년간 집행이 부진하였던 점을 감안, 2배 가까운 증액이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70,000	-	70,000	-	-	-	70,000	50,049	71.5	71.5	-	19,951
2019	36,720	-	36,720	-	-	-	36,720	8,420	22.9	22.9	-	28,300
2020	36,919	-	36,919	-	-	-	36,919	31,082	84.2	84.2	-	5,837
2021	34,929	-	34,929	-	-	-	34,929	-	-	-	-	-

■ 의견 : 사업 집행에 맞는 예산 편성

-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감안해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할지에 대한 검토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공공운수노조	76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공공운수노조	78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공공운수노조	80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참여연대	81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참여연대	82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노조	8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공공운수노조	86
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공운수노조	88
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공공운수노조	9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전입금(국민연금 가입운영비)	공공운수노조	9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공공운수노조	93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참여연대	95
식품의약품안전처	면허료 및 수수료 / 인허가 심사지원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96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98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100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공약 이행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어린이집 확충(3134-344)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어린이집 확충	60,929	60,881	60,881	60,973	60,903
- 국공립 신축	27,525	24,001	24,001		19,628
- 장애아 전문 신축	1,102	564	564		984
- 국공립 매입	-	-	-		5,845
- 공동주택 리모델링	25,600	23,100	23,100		21,450
- 국공립 장기임차	3,286	9,600	9,600		9,600

■ 문제점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을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2020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아동수 대비 22.5%에 불과하여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하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0년 766억원 → 2022년 60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특히 국공립 신축 예산은 2020년 408억원에서 2022년 196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 들었음.

* 2022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신축 예산은 33개소에 불과

■ 의견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0% 목표 달성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필요
- 코로나19 시대 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는 더욱 절실하며, 이용아동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충 목표('22년)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
- 이용아동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0% 달성을 위해 늘려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수는 196.7천명(아동감소분 △9.6% 가정)
- 이를 위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561㎡) 665개, 매입(465㎡) 108개로, 장기임차(민간,가정) 700개가 더 필요. 물론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다양한 정책 믹스가 가능할 수 있음

구분		총계	기존 (‘20년)	추가				
				소계	신축	매입	장기임차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수 (단위:개소)	6,431	4,958	1,473	665	108	300	400
	이용아동수 (단위:명)	450,251	253,251	197,000	87,000	100,000	6,000	4,000
전체 이용아동수 대비 (연간 아동감소 추정치-9.6%적용)		40%	22.5%	17.5%	7.73%	8.89%	0.53%	0.35%

- 이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는 약 380,533백만원

	22년 계획	40% 달성 추가 목표	필요 예산
국공립 신축	33개	622개	292,413백만원 = 93개소 × 465㎡ × 1,676천원/㎡ × 50%(국비, 2년 분할)
국공립 매입	15개	93개	36,239백만원 = 93개소 × 465㎡ × 1,676천원/㎡ × 50%(국비)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70 가정30	민간300 가정400	민간어린이집 24,150백만원=300개소 × 210백만원/개소 × 50%(국비) 가정어린이집 27,750백만원=400개소 × 150백만원/개소 × 50%(국비)
합계			380,533원

- 2022년 예산에 40% 달성을 위한 단계적 목표 수립 및 예산 반영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최저임금 보장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장애인활동지원	1,301,302	1,506,974	1,521,719	1,740,523	1,740,523
-활동지원급여	1,281,233	1,483,203	14,745		1,709,854

(‘21) 1,506,974백만원 → (‘22) 1,740,523백만원 (+233,549백만원, 15.5% 증)

○ 활동지원급여 : 1,483,203 → 1,709,854백만원 (+226,651백만원, 15.3% 증)

- (기본급여) (‘21) $99,000\text{명} \times 14,020\text{원(단가)} \times 127\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67\% = 1,417,239$
 → (‘22) $107,000\text{명} \times 14,805\text{원(단가)} \times 127\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67\% = 1,617,529$

- (보전급여) (‘21) $54,300\text{명} \times 14,020\text{원(단가)} \times 9.62\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67\% = 58,882$
 → (‘22) $72,495\text{명} \times 14,805\text{원(단가)} \times 9.62\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67\% = 83,013$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
 (‘21) $408\text{명} \times 14,020\text{원(단가)} \times 154\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67\% = 7,082$
 → (‘22) $508\text{명} \times 14,805\text{원(단가)} \times 154\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67\% = 9,312$

■ 문제점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 장애인활동지원사 2021년 급여 단가는 14,020원으로 월 지원금액 1인당 178만원이고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실제 보조 금액은 67%)
- 2019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7%가 월 평균 임금이 150만 원 미만으로 저임금 문제가 심각. 국정감사에서 도 매년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한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 의견

- 급여 단가 14,805원 → 16,300원 인상, 172,660백만원 증액
- 2022년 급여 단가는 14,805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최저임금도 준

수하기 어려움

- 최저임금 준수 및 연차, 사회보험 부담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를 16,300원으로 올려야 하며, 수가 대비 인건비 지급을 준수를 의무화 하여야 함.

<표> 시간당 요구 수가 16,300원 산출 근거

구분		산출 근거	지출 항목 (2022년)
기본급		2022년 최저임금 (A)	9,160원
주휴수당		최저임금/5 (B)	1,832원
연차수당		18일 기준, 18/260*기본급 (C)	634원
유급휴일 수당		20일 기준, 18/260*기본급 (D)	704원
퇴직(적립)금		(A+B+C+D)/12	1,028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A+B+C+D)*4.5%	555원
	건강보험	(A+B+C+D)*3.495%	431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1.52%	50원
	고용보험	(A+B+C+D)*1.45%	179원
	산재보험	(A+B+C+D)*0.74%	91원
활동지원사 인건비 소계			14,663원(A)
수가 대비 인건비 지급율			90.0%
전담자 인건비		수가요구(안)*2.6%	428원(B)
운영비		수가요구(안)*7.4%	1,209원(C)
합계(수가 요구안)			16,300(A+B+C)

- 급여 단가를 16,3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예산 소요는 172,660백만원

* 1,709,854백만원 * 단가인상율(16,300/14,805-1) = 172,660백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65,430	1,614,123	1,624,972	1,724,607	1,659,378

■ 문제점

- 국공립·법인, 취약보육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고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 인상하여 월 265만원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전체 보육교사 24만 명 중 71%인 17만 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90%가 최저임금 수준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2020년 12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2,223명을 대상으로 기본급 실태조사한 결과, 월 급여가 179만 원(2020년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1만 923명(84.9%)으로 가장 많았음
-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부 인건비 지원 기관과 달리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동일. 이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유인이 없어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 인건비 지원 기준 월 급여는 1년차 191만 원임.

■ 의견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기준으로 보장하고 국비 지원해야 함. 국고보조율 50%를 가정할 경우 약 1,000억 원 소요
- 이미 기관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여유분을 감안할 경우 실제 필요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

늘어나는 노인인구수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노인보호전문기관

■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노인보호전문기관	9,445	10,366	10,366	12,618	11,522

- 사업내용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를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

■ 문제점

-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해 지난 3년 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1년 34개소에서 38개소로 증가했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17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한 것에 따름.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로 2021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26,761명에서 2022년 26,165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종사자 1인당 할당 노인 수는 26,000명 이상으로 매우 높음.
-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9년 5,243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19.3% 증가함.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1,283원에 그친 노인 1인 당 노인보호예산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음. 학대신고건수당 노인보호예산은 2022년 1,840,869원으로 2021년 1,850,085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함.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나 예산은 되려 줄어든 상황임.

■ 의견

-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엔 턱없이 미미한 수치임. 전반적인 노인 인구수 증가와 노인학대 증가, 노인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증가 정도를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평등한 요양시설 접근성을 보장해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요양시설 확충

■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노인요양시설 확충	69,385	66,917	104,602	74,148	61,990

- 사업내용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공립 요양시설 지속적 확충 및 장기요양기관 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 도모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을 통해 시설 입소(이용) 노인 인권 보호 및 개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문제점

-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9.385백만원임. 2021년 편성되었던 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
-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신축 48개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국고보조율이 80%인데 반해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은 50%임. 일반형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하겠다 발표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예산은 기존 6개소 운영비만이 책정되어 있음.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 의견

-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일반형 노인요양시설보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을 선호하고 있음. 치매 노인과 비치매 노인의 공립요양시설 접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을 치매전담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5년간 공공병상 4만개 확충, 70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64,497	143,266	143,266	261,546	165,748
•지방의료원시설장비현대화	102,632	75,134	75,134	-	77,569
•기능특성화및감염병대응	-	37,132	37,132	-	45,087

<2022년 정부 예산안 산출 근거>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75,134 → 77,569백만원 (2,435백만원 증)
 - 지방의료원 35개소×4,293.3백만원×국비50% → 35개소×4,432.5백만원×국비50%
 - *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국비60% (3년 간 한시적용)
-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 37,132 → 45,087백만원 (7,955백만원 증)
 - 지방의료원 35개소×2,121.8백만원×국비50% → 35개소×2,576.4백만원×국비50%
 - *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국비60% (3년 간 한시적용)

■ 문제점

- 민간 중심 의료 체계는 ‘낭비의료’와 ‘필수의료 과소공급’로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지만, 공공병상 비중은 10.2%에 불과하여(OECD 평균 71.4%)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은 1.3개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임(OECD 평균 3.0개)
 - 이러한 민간 중심 의료 체계는 불필요한 ‘낭비 의료’와 필수 분야의 ‘과소 공급’을 낳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병상의 부족에서 단적으로 나타남
 - 공공병상의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여 민간의 과잉 의료를 견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예방부터 응급진료, 재난 대응까지 통합적인 의료시스템 구축 필요
- 2022년 정부 예산, 신규 공공병원 예산 0원

- 2022년 지방의료원 신·증축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103억, 9.3%를 증액하였으나 신규 공공공병원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음
- 예산안이 근거로 하고 있는 정부가 2021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1~'25)'은 5년간 신축·이전·증축 등을 통해 약 5,200개 병상을 확충하는 수준으로 5년간 인구 천명당 0.1개의 공공병상 증가에 불과한 매우 빈약한 계획임

■ 의견

○ 5년간 4만개 공공 병상 확충 목표 설정

- 공공병상 총량 목표를 인구 1천명 당 2.0개로 설정.(OECD 평균은 3.0개) 이를 위해서는 인구 1천명 당 0.7개 공공병상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며 숫자로는 약 4만개에 해당. 5년 내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별로 2개 이상, 70개 중진료권 중 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24개 권역에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 공공병원 신축(건강보험공단 병원 포함), 병상 증설, 민간 병원의 인수 등의 방법 활용

<표> 공공병상 4만개 소요 예산

구분	병상 당 소요 예산	병상 확충	소요 예산
신축	4억 원	25,000병상	10조원
증축	3억 원	5,000병상	1.5조원
민간병상 매입	1.5억 원	10,000병상	1.5조원
합계		40,000병상	13조원(연간 2.6조)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급성기 병상, 300병상 급 이상으로)

○ 국비 보조 비율 확대

- 현재 50% 지원, 3년간 한시 60% 비율 적용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 현재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에 대해서는 3분의 2까지 설치비 지원

○ 2022년 예산 1,716,000백만원 증액

- 5년간 4만 병상 확충에 필요한 2.6조에 국고지원을 66% 적용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준수, 코로나 대응 비용 전가 복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4931-300)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건강보험가입자지원	7,348,164	7,583,350	7,655,350	9,158,448	8,584,293

<2022년 국고지원 세부 내역>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 8,584,293백만원

※ 일반회계(11.8%), 국민건강증진기금(2.5%) 지원액을 포함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의 14.3% 지원

- '22년 보험료 예상수입액(727,540억원) × 11.78% = 8,571,128백만원

※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 고려

- '22년도 과징금 예상수입액(26,129백만원) × 50% = 13,065백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증진기금) : 1,814,190백만원

- '22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2,792,215백만원) × 65% : 1,814,940백만원

* 담배반출량(궐련담배 30.17억갑, 궐련형 전자담배 3.40억갑) × 담배부담금(궐련담배 841원/갑, 궐련형 전자담배 750원/갑)

■ 문제점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가의 의무

- 2001년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 위기 발생 이후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되어 정부지원 법적근거 마련 됨.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따라 정부지원

연도	'02년 ~ '04년	'05년 ~ '06년	'07년 ~ 현재
법적 근거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지원 기준	-지역 재정의 50% • 일반회계 : 40% • 담배부담금 : 10% *(부담금 예상수입 97% 이내)	-지역 재정의 50% • 국고지원금 : 35% • 담배부담금 : 15% *(부담금 예상수입 65% 이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 국고지원금 : 14% • 담배부담금 : 6% *(부담금 예상수입 65% 이내)

- 의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은 시혜적·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
-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

원을 지원하고 있음 : 대만 23.0%, 일본 28.7%, 프랑스 55.2% 등

○ 2022년 일반회계 국고지원비율 11.78%, 14% 대비 1조6천억원 미달

- 정부는 2007년 이후 2020년까지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14%에 미달하여 편성하고(평균 12%) 국민건강증진금 담배부담금도 예상수입 65% 한도 단서 조항을 근거로 6%보다 낮은 비율(평균 3.5%)을 지원하여,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 기준 누적 28조원을 적게 지원하였음
- 2022년에도 일반회계 지원금을 예상수입의 14%가 아닌 11.78% 기준으로 편성

○ 코로나 대응 비용 건강보험 재정 전가 총 2조4천억원

-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할 코로나 대응 비용을 의료인력 지원금, 코로나19 진단검사, 예방접종 비용 등 누적 2조4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을 전가해 왔음

총액	24,292 억원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21.1.31.)	5,298 억원
코로나19 보험료 경감(~' 21.5.31.)	6,459 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지원금 지급(' 21.2.1~)	720 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20.3~)	2,898 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20.6~)	8,917 억원

- 2021년 코로나 인력 감염관리지원금 관련 72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추경), 건강보험재정에서 720억원을 부담하였으나, 2022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건강보험 거버넌스 기구는 국고지원 확대 및 코로나 대응 비용 추가 반영 의결

-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2022년 의료 수가를 결정하며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으로 마련토록 부대의견 의결('21.6.1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2021년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감염관리지원금) 한시적 수가 신설 결정시(21년 10차 회의(5.7)) 의료인력 지원금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

■ 의견

- 내년 예상보험료 14% 기준 국고지원 : 1,601,267백만원 증액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 대응 비용 : 100% 국고 지원

국제 기준의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	-	28,840	10,990

■ 문제점

○ 코로나19 시대 가장 시급한 사회안전망, 상병수당

-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나, 시행을 위한 관련 시행령(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이 벽에 막혀 있음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대상도 적고 보상 수준도 낮다

-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편성. 최초 복지부 요구안 288억이 대폭 삭감되어 109억의 예산으로 편성
-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되는데 보장수준은 최저임금의 60%로 고정하는 대신 보장기간을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정부 시범사업안은 보장수준이 최저임금의 60%로 너무 낮고 보장기간도 최대 4개월로 너무 짧음. 대기기간도 14일까지 설정하여 국제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제도로 설계
- * 보장수준은 정액으로 최저임금 60%로 설계하고 있는데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실업급여 하한선인 최저임금 80% 기준보다 낮음

〈ILO 상병급여협약(제130호) 상병급여권고(제134호)와 시범사업 모델 비교〉

항목	ILO 기준	시범사업 모델
적용범위	(최저) 모든 임금근로자, 경제활동인구 75% 이상 (권고) 경제활동인구 100%	6개 지역 263만 명
수급요건	(최저) 개별국가에 위임 (권고) 대기기간 폐지	모형1 : 7일 / 모형2 : 14일 / 모형3 : 3일
급여기간	(최저) 모든 기간 원칙, 최저 52주 이상 (권고) 모든 기간	모형1·3 : 90일 / 모형2 : 120일
급여수준	(최저) 이전 소득의 60% 이상 (권고) 이전 소득의 66.7% 이상	일 41,860원('21년 최저임금 60%)

○ 신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범사업 실시 필요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실제 도입될 수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실시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는 4차 상병수당제도가기획자문회의(21.8.31.)에서 시범사업 모형 구체적인 사항은 하반기 논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 의견

○ 국제기준(ILO 상병급여협약)에 적합한 시범사업 설계

- 수급요건 : 폐지 또는 최소화
- 급여기간 : 최소 1년 이상 보장
- 급여수준 : 기준임금의 60%

○ 시범사업 예산 15,640백만원 증액

- 급여 수준 기준임금 60% 상향 : 현재 예산 대비 150% 증액 필요

* 2021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273.4만원(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으로 2021년 최저임금의 약 1.5배 수준임

급여기간 연장(90일→180일(내년 말까지), 120일→180일(내년 말까지) : 약 1.8배 증액 필요

- 상병수당 급여 예산 92억원을 1.5×1.8배로 예산 증액하려면, 추가 15,640백만원 필요

정부 최초 요구안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06)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	-	26,525	26,525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22년) 26,525백만원 (순증)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 ('22년) 26,522백만원

- 22만명(납부재개자) × 893천원(납부재개자 평균 인정소득) × 9%(보험료율) × 50% (지원율) × 3개월(평균 지원 기간)*

* 타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연평균 지원 개월 수(6개월) 고려, '22.7월 사업 수행 시 시행 기간 6개월 중 3개월을 평균 지원 개월 수로 산출

< 납부재개자(22만명) 산출식 >

- 370만명(납부예외자, '18) × 86%(사업중단 등 해당인원 비중)¹⁾ × 6.93%(납부재개율)²⁾ × 99.65%(재산·소득기준 지원제외 비율)³⁾

- 1)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경제적사유(사업중단, 실직 등)에 해당하는 인원 비중('18년)
- 2)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비율('18년)
- 3)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재산·소득 기준으로 인한 지원제외 비율(0.35%) 반영('18년)

○ 운영비 : ('22년) 3백만원

- 여비 1백만원(2명×80천원×6.25회)
- 업무추진비 2백만원(업무협약(10명×10천원×5회) + 전문가 등 간담회(10명×30천원×5회))

■ 문제점

- 코로나 상황 속 노후 소득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는 668만명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납

부예외 48.1%, 장기체납 13.4% 등 타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납부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2018년 6월말 기준 평균 가입기간도 67개월에 불과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위기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비율 또한 전년도 대비 2.2배 이상 증가**
- * 코로나19 이후 1년간 월평균 개인소득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묻는 조사⁴⁾에서, 임금근로자의 88.2%는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61.2%가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이 중 9.7%는 월평균 100만 원의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 2020.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납부예외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2배 수준이며, 납부예외 사유로는 재해생활곤란이 27.6%, 실직 9.5% 등⁵⁾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예상치가 너무 적고 시행 시기 늦어

-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납부예외 장기화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예산 편성되었음(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 하지만 납부재개자를 22만 명으로 너무 적게 잡고 있음. 과거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를 한 비율(2018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원 제도가 생길 경우 납부재개자가 배 이상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제도 도입 시기를 앞당겨 내년 7월이 아니라 1월 시행되어야 함

■ 의견

- 시행 시기 당기고 현실적인 지원 대상 설정으로 제대로 준비 : 86,800백만원 증액
- 납부재개자수 : 납부재개율 6.93% → 15%로 상향시 47만명
- 평균지원 기간 : '22년 1월 사업 수행을 목표로 평균 지원 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수정
- 지원금 : 47만명(납부재개자)× 893천원(납부재개자 평균 인정소득) × 9%(보험료율) × 50%(지원율) × 6개월(평균 지원 기간) = 113,322백만원

4) 허중호. (2021). 코로나 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국가미래전략 Insight, 12.

5) 2020년도 복지부 국감자료(백종헌 의원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91-911)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당초	수정	요구안	조정안
일반회계전입금	10,177	10,199	10,199	55,344	10,338

■ 문제점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경우 국고에서 매년 100억원만 지원되고 있어 2022년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비 5,422억원의 1.8%만 국고지원되는 셈이며, 98.2%는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기에 후세대로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증가 추세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비는 정액 지원으로 실제 국고부담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2020년 말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한 관리운영비는 총 6조 8,397억 원에 달하는데, 1992년~2020년까지 가입자가 부담한 공단 관리운영비를 국민연금기금 연평균 누적수익률인 6.27%로 운용하였을 경우, 2020년까지 총 11조 9,930억 원의 기금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운영비를 기금소진시점(2057년)까지 동일한 누적수익률로 운용하는 경우 약 113조 원의 후세대 부담 경감 가능
- 제4차 재정계산 시 제도발전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비 국고부담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21대 국회에서도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해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5,400여 억 원)으로 국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
- * 정춘숙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02995)

■ 의견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 출산크레딧 확대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범위 확대

사회서비스원 직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1,551	14,723	14,723	24,512	17,255
- 중앙지원단 설립·운영	963	1,134	1,134	-	1,141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0,158	13,436	13,436		15,959
-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430	153	153		155

■ 문제점

○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 민간중심 공급의 한계

- 합계출산율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장애인-노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확대로의 정책환경 변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 '20년 기준 노인, 장애인, 보육 사회서비스 예산은 11.4조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최소 8.7%~최대 23.7% 재정투입 확대. 그러나 '19년 기준 사회서비스 시설 5.9만개 중 민간운영 88%, 민간위탁 11%, 공공 직영 1%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비중이 압도적.
-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절대다수가 국가 및 지자체 예산(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육-기관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단가)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과의 현격한 질 격차 발생.

○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하지만 예산은 아직도 시범사업 수준

-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은 법이 통과되기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 인건비는 본부 인력 20명의 50%만 지원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전년대비 1.4%만 인상되어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본부의 안정적 행정 인력 지원도 부족하거니와 현장 인력 지원도 턱없이 부족

- 사업 운영비는 1개소 당 연 5억원에 불과하며 전년대비 동결. 3년 이상 지원 시도는 절반만 지원하고 있음
- 직접 운영 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비와 종합재가센터 135개 설립 예산 편성 및 돌봄노동자 월급제 시행을 위한 처우개선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또한 본부 행정 인력 지원 인력 현실화 및 시설 관리 등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되어야 함.

■ 의견

○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 사업 : 60,950백만원 증액

-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이를 통한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정부위탁사업 직접 수탁)서비스 제공 확대.
-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106개 확충에 따른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3,180개 + α (상용직 월급제 기준)

○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 60,950백만원

- 시설비: 200백만원 × 106개소 × 100% = 21,200 백만원
- 인건비: 30명 × 24,000천원 × 106개소 × 50% = 38,160백만원
- 사업·운영비 : 30백만원 × 106개소 × 50% = 1,590백만원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현행 50% → 70% 상향(부대의견 요구)

- 사회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확대 및 지역간 사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해 서울 외 지방의 사회서비스원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현행 50% ⇒ 70%로 상향 필요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별표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개정

의료급여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불가능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급여

■ 현황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일반회계	7,003,747	7,680,461	7,680,461	8,285,384	8,123,234

-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문제점

- 의료급여의 재정규모는 연평균 약 5%씩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제도 자체의 확장을 의미하기보다, 수급자수의 미세한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분임.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음. 부양의무자기준의 존재 자체가 빈곤층에 대한 차별임.
-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지만 생계급여에서 고소득·고재산가를 제외한 완화조치, 의료급여에서는 언급조차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를 남기는 한계를 가짐.

구분	2020년 실집행액	2021년 요구안	2022년 정부안	증감	
				금액	%
의료급여	7,002,997	7,680,461	8,123,234	442,773	5.8

■ 의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함.
-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함.

임상시험, 신약 심사는 늘어나는데 심사지원 인건비는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 현황

1. 세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 65-651	23,726	21,367	21,367	39,879	39,879

2.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인허가 심사지원 등 (수입대체경비) (7037-650)	14,649	19,773	19,773	21,904	21,904

■ 문제점

1. 세입 예산

- 인허가 심사지원은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및 의약품 심사 수수료 수입을 통해 대체경비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 수수료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면, 세출도 줄여야 하는 구조임.
- 2022년 수입대체로 예상한 수수료 수입은 2021년 214억보다 86.6%가 증가한 399억원을 책정하였음. 산출내역에 의약품 심사료가 기존 184억원에서 354억으로 전년대비 9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수수료 수입의 가장 중요한 의약품 허가 심사료 30% 인상은 작년에 이뤄진 사항임. 세입 증가 예상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예측됨.

2. 세출예산

- 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은 10%가량 증가했으나 가장 중요한 상용임금 예산은 153억에서 148억으로 오히려 축소되었음.
- 최근 정부는 제약사업 진흥을 위해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인허가 심사를 관리하는 심사관은 가급 공무원 20명 안팎, 나급 공무원 30명 안팎에 불과함. 심사관들은 매년 700~800건의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 그리고 40개 품목의 신약 허가를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을 정도로 과업에 시달리고 있음.
-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사관들의 허가심사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부재 및 부실한 허가심사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음. 실제로 한국은 부실한 임상시험 관리 및 신약허가 문제로 올리타 사태, 인보사 사태 등 수년간 몸살을 앓고 있음.
-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 나급 심사관 56명 중 14명(25%)이 퇴직하기도 하였으며, 평균 재직기간인 3~4년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견 : 인허가 심사지원을 수입대체 경비가 아닌 세금을 통해 부담하는 예산으로 전환

- 한국은 총 250명 가량의 심사인력이 의약분야 제품 전체를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FDA의 심사인력은 8398명, 유럽 EMA는 총 4000명, 캐나다는 1160명, 일본은 516명의 심사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 정부들은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에 3조 원의 R&D 비용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안전관리 영역의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제약업계의 심사료 부담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인력 확충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됨. 정부는 심사료와 무관하게 환자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재정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가 아니라 임상시험 산업화 예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 현황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2033-300)	593	1,500	1,500	2,103	2,103

■ 문제점

-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증가하는 임상시험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그림 14 . 임상시험 승인현황, (출처: 한국임상시험포털, 2021)

-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피험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및 임상시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자격이 없는 기관에서도 폭넓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주도의 임상시험 활성화 정책임.

- 개발중인 임상시험약의 안전성 정보보고(DSUR) 지원 및 강화와 같은 임상시험 체계를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예산은 외면하였음. 반면, 임상시험 활성화 정책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사업비는 68%를 증액하였음.

■ 의견 : 중앙심사위원회 운영 축소하고, 사업명에 맞는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예산 집행 필요함.

-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병원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제약회사는 투자자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국가는 제약바이오 활성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국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음.
- 중앙심사위원회 방식의 임상시험 운영은 세밀하고 신속해야 할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어렵게 하며, 임상시험 건수만 늘릴 우려가 있음.
- 임상시험 정책은 시험대상자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도 단순한 활성화가 아닌 안전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함.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 실적행률은

2019년 0.4%, 2020년 11.1%, 2021년 7월 6.3%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결산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8,460	45,858	45,858	35,943	26,604	△19,254	△42.0

■ 사업내용

- 동 사업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관리 인프라로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및 독립적 감염병동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 * (호남권)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충청권) 충청남도,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경상남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 대구광역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2년 신규 권역)

■ 문제점

- 동 사업은 당초 2017년 12월 총사업비 확정 후 2021년까지 완공을 거쳐 2022년 시범 가동 후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수립·발표 시 주요과제에 포함 된 사업으로, 2015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
-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

- 1개 권역에 우선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해당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호남권 조선대병원 1개소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이후 매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7~2019년 3년 연속 집행 실적이 없음
- 코로나19 이후 2020년 8월 4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회에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7개소 확대가 필요함을 발표하였고, 이후 권역선정위원회에서 6개권역 7개소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필요('21.2.6.) 발표,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 및 수도권, 제주권 조속히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음('21.3.26.)
- 2019년 동사업의 실집행률은 0.4%에 불과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의 실집행률은 11.1%,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7개소 확대 발표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1년 7월 기준 실집행률은 6.3%로 매우 낮음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2,822	-	2,822	-	-	-	2,822	2,822	100	100	-	-
2019	7,253	-	7,253	-	-	-	7,253	7,253	100	100	-	-
2020	3,860	4,536	8,396	-	80	-	8,476	8,460	100.8	99.8	16	-
2021	45,858	-	45,858	16	-	-	45,874	43,590	95.1	95.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2,822	2,822	2,822	2,822	-	2,822	-	2,822	-	-
2019	7,253	7,253	7,253	7,253	2,822	10,075	27	10,048	-	0.4
2020	3,860	8,396	8,396	8,396	10,048	18,444	933	15,649	1,862	11.1
2021. 7월기준	45,858	45,858	43,590	43,590	15,649	59,239	2,902	-	-	6.3

■ 의견

-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함

환경노동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환경부	대기오염발생원관리 (전기차 보급사업 등)	나라살림연구소 김수나	104
환경부	대기오염발생원관리 (자동차 배출사업 관리사업 등)	나라살림연구소 김수나	107
환경부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환경운동연합	110
환경부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환경운동연합	111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운영/유체성능시험 센터 설치/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환경운동연합	113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공공운수노조	114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공운수노조	116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자치단체 이전액 불용, 과다 편성할 필요 없어

환경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대기오염발생원관리
(단위사업 내 전기차 보급사업 등)

■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294,603	441,553	441,553	942,800	892,769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4,063	21,000	21,000	21,000	21,000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53,086	1,122,584	1,122,584	1,935,236	1,935,236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0,981	7,000	7,000	6,580	5,721

- 사업내용:

- ① 수소차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차량 구매 보조금 및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 등 지원
- ②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③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자동차의 구매/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 ④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 빈도가 높고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사용 버스 및 폐기물청소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보급

■ 문제점

- 2020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기오염발생원관리 본예산액 1,255,698백만원
- 2020년 결산서에는 해당 단위사업에서 전용감액 1.4%(18,000백만원), 불용액 6.5%발생. 반

면, 2022년 예산안 각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에는 이·전용액이 누락되어있음.

- 또한, 교부받은 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매우 부족함.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633-301)

- 2018-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출연·보조사업] 등의 실집행률을 확인하면 2018년 90.4%, 2019년 74%, 2020년 73.9%로 매우 부진함. 연례적 불용액 삭감 필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352,279	447,529	447,526	447,526	80,787	471,242	425,863	32,647	12,632	90.4
2019	540,256	632,976	632,974	632,974	36,315	669,289	495,428	108,106	65,755	74.0
2020	800,180	910,680	853,086	853,086	108,107	961,193	710,290	193,455	57,455	73.9
2021. 7월기준	1,122,584	1,122,584	742,004	742,004	193,455	935,459	578,701			51.6

△ 수소차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633-306)

- 2018-2021년 [수소차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출연·보조사업] 등의 실집행률은 2018년 106.3%, 2019년 74%, 2020년 64.5%로 매우 부진함. 연례적 불용금액 삭감이 필요함.

수소차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18,585	29,835	29,835	29,835	3,920	33,755	31,705	2,048	2	106.3
2019	142,050	226,458	218,958	218,958	2,048	221,006	167,530	51,488	1,988	74.0
2020	349,458	317,658	294,603	294,603	51,488	346,091	204,829	56,663	84,599	64.5
2021. 7월	441,553	441,553	264,838	264,838	56,663	321,501	181,379			41.1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633-307)

- 2018-2021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출연·보조사업] 등의 실집행률은 2018년 66.7%, 2019

년 65.9%, 2020년 83.7%로 매우 부진함. 연례적 불용액 삭감 필요.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19,298	19,298	19,298	19,298	1,136	20,434	12,873	1,316	6,245	66.7
2019	17,346	17,346	17,346	17,346	1,316	18,662	11,424	2,354	4,884	65.9
2020	10,840	10,840	10,840	10,840	2,354	13,194	9,073	2,088	2,033	83.7
2021. 7월	6,880	6,880	3,899	3,899	2,088	5,987	3,759			54.6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1633-310)

- 2018-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출연·보조사업] 등의 실집행률은 2018년 99%, 2019년 67.5%, 2020년 43.3%로 매우 부진함. 연례적 불용액 삭감 필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4,516	4,516	4,516	4,516	75	4,591	4,471	-	120	99.0
2019	5,700	5,700	5,700	5,700	-	5,700	3,847	389	1,464	67.5
2020	15,000	15,000	14,063	14,063	389	14,452	6,490	2,374	5,588	43.3
2021. 7월기준	21,000	21,000	12,125	12,125	2,374	14,499	10,972			52.2

■ 의견 : 99,579 백만원 삭감

자치단체 이전액 실질화 필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대기오염발생원관리
(단위사업 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등)

■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262,343	205,561	207,161	149,657	148,519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575,503	655,706	655,706	593,613	536,695
생활주변미세먼지 관리사업	68,344	72,761	72,761	77,881	72,764

- 사업내용:

- ①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 사업장총량관리제, 굴뚝원격관제센터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중소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사업, 저녹스버너 성능검사 및 사후관리, IoT 활용 소규모 사업장 관리기반 마련, 첨단 감시장비 운영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미세먼지 등 인벤토리 구축, 대기관리권역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 굴뚝 TMS 통계관리 등
- ②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인증 결함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검사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기반 강화, 자동차 연료 환경성 품질 검사,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무공해차 인증동 신설
- ③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 가정용 보일러 인증 운영사업, 영세사업장 악취기술 지원, 악취실태조사,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 유증거 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사후관리, 유증거 회수설비 설치 지원, 도로 VOCs 조사 분석 시스템 운영, 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관리, 비산배출 전산 관리시스템, 등

■ 문제점

- 2020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대기오염발생원관리 전체 본예산은 980,478백만원, 20년 결산

서를 통해 해당 단위사업에서 이용금액이 60,482백만원이 발생함. 2022년도 예산안에 기록된 최근 4개년 결산자료를 통해서는 △ 사업장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 이전용액 -17,728백만원, △ 생활주변미세먼지 관리사업 이전용액 18,700백만원, 총 972백만원 또는 36,428백만원 규모의 이전용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부처의 2022 예산안 결산수치와 2020년 결산서 이전용 금액에 차이가 있음.

- 대기오염발생원관리 단위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모두 자치단체이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바, 실집행률 개선이 필요함.

단위사업명	지출목명 (본예산)	전용금액	이용금액	차기년도 이월액	불용액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자치단체이전		60,482		6,915
	유형자산			1,722	
	연구용역비			703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1633-301)

- 2018-2021년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출연·보조사업] 등의 실집행률은 2018년 71.8%, 2019년 47.5%, 2020년 78.1%로 매우 부진함. 연례적 불용금액 삭감 필요.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9,316	9,316	8,766	8,766		8,766	6,688	258	1,820	71.8
2019	17,465	146,169	143,113	143,113	258	143,371	69,420	53,999	19,953	47.5
2020	257,874	252,674	233,901	233,901	53,999	287,900	197,362		4,993	78.1
2021.7	168,957	170,157	141,951	140,853	87,874	230,868	165,381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1633-302)

- 2018-2021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출연·보조사업] 등의 실집행률은 2018년 96.2%, 2019년 60.8%, 2020년 88.5%로 매우 부진함. 연례적 불용금액 삭감 필요함.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165,391	165,391	161,985	161,985	4,452	166,437	159,140	953	6,344	96.2
2019	188,133	681,808	649,548	649,548	953	650,501	414,481	85,841	150,179	60.8
2020	602,703	581,583	555,209	555,209	84,467	639,676	514,620	38,679	86,377	88.5
2021. 7월기준	635,908	635,908	498,522	498,522	-	498,522	375,542			62.2

△ 생활주변미세먼지 관리사업 (1633-303)

- 2018-2021년 [생활주변미세먼지 관리사업 출연·보조사업] 등의 실집행률은 2018년 99.2%, 2019년 50.5%, 2020년 91.1%로 매우 부진함. 연례적 불용금액 삭감 필요.

생활주변미세먼지 관리사업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17,440	17,440	17,280	17,280	2,400	19,680	17,305	0	2,375	99.2
2019	24,000	84,150	84,150	67,287	-	67,287	42,527	14,643	10,117	50.5
2020	74,407	77,407	57,933	57,933	19,840	77,773	70,832	-	-	91.1
2021. 7월기준	58,735	58,735	48,232	48,232	-	48,232	35,985	-	-	61.3

■ 의견 : 67,397백만원 삭감.

하천 연속성 회복,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1133-326)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	11,500	11,500	11,500	7,500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00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8,000,000천원 가. 설계·공사비(8,000,000천원) · 횡단구조물 25개소×320,000천원=8,000,000천원	4,000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000,000천원 가. 설계·공사비(4,000,000천원) · 횡단구조물 12개소×320,000천원=4,000,000천원

- 사업내용 : 하천 내 횡단 구조물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생태계 훼손의 원인 대한 조사평가를 통한 사업 기초자료 확보,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통한 수질개선, 수생생물 이동통로 확보, 흐름 회복 등을 위해 용도 상실 후 방치된 횡단구조물 개선 및 철거

■ 문제점

- 보와 댐을 비롯한 하천 구조물은 하천의 연결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임.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을 가로막아 수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질오염을 유발.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보는 33,779개로, 지류·지천의 길이 대비 횡단구조물 수는 km당 약 1.2개임. 이는 다른 EU의 주요 국가(독일, 0.5개/km)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치임.
- 현재 데이터 상 용도 상실, 파손 등의 이유로 폐기 처리되어있는 보의 숫자는 약 3,800개에 달함. 작년 신규 편성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이 산출근거로 제시한 횡단구조물 25개소의 철거임. 지금과 같은 계획으로는 방치된 보를 철거하는 데만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림.
- 이러한 상황에서 하천 횡단구조물 철거 개소의 수를 줄인 예산 조정안은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결정임. 생태계 복원과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의견 : 230억 원으로 대폭 증액

한강,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시급히 이행해야

환경부 수질관리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1133-306)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27,088	30,923	30,923	61,721	61,721

기능별 예산안 내역	2020					2021('21.7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취양수·친수시설 개선·보상	6,122	-	-	-	-	5,596	5,596	5,596	5,596	-	-	35,469

- 사업내용 : 국정과제(4대강 재자연화)인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취·양수장, 친수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

■ 문제점

-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으나, 임기 말인 현재 4대강사업 문제 해결은 매우 지지부진 함.
- 2021년 2월 의결된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바탕으로 현재 한강 및 낙동강 보 처리에 대한 후속절차가 진행 중임. 시설개선 예산의 확보로 보 개방확대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함.
- 현재 환경부는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전체 사업기간 7년으로, 2022년 28개소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음. 하지만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너무 느린 속도, 너무 긴 사업기간임.
- 전체 사업기간의 단축, 그리고 단축된 기간만큼 이행되어야 할 2022년도의 예산 대폭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내야 함.

■ 의견 : 한강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비용 626억 원으로 증액

- 전체 사업기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대상시설 28개소에서 51개소로 늘리는 것을 고려,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장 시설개선('22~) 1단계 1차년도 사업비를 213억 원에서 413억 원 증액.

박근혜 적폐 사업, 물산업클러스터 개진 독에 세금 붓기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 환경개선특별회계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2038-321)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2038-319)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환경개선특별회계 /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2038-327)

문의 : 생태보전국 (02-703-7066)

■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18,040	22,912	22,912	27,108	23,862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1,600	7,283	7,283	10,000	6,026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3,702	6,030	6,030	13,680	4,930
총계	23,342	36,225	36,225	50,788	34,818

- 사업내용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 수행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 종합 유체성능시험시설 구축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 물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및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범사업 지원

■ 문제점

-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은 물산업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입지함.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만 사업비 2,409억 원을 사용하는데 이어 2018년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통과와 함께 묶여 통과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에서 물산업클러스터에 집중적으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만들어짐.
- 물산업클러스터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추진됨. 국내 물 기업이 18,000개에 이르지만, 기업의 입지 목표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물산업 발전에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대규모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개별 입주기업 지원 보다는 테스트베드 중심의 열린 플랫폼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기존 추진 실적과 목표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의견 : 233억 원으로 삭감

- 목표와 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지원은 부적절. 2020년 수준으로 예산 책정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서 예산 지원방식 고민해야.

지속되는 고용위기, 고용유지지원금 삭감 회복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금(1045-330)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결산	당초	수정	요구안	조정안
고용유지지원금	2,288,089	1,372,832	1,877,247	598,058	598,058
- 고용유지지원금(사업)	2,277,893	1,365,832	1,855,247	-	597,621

■ 문제점

○ 위기산업 고용유지지원금 10월 말 종료 → 무급휴직 전환 가시화

-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연장 1개월을 발표(9.15)함.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온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0월말까지만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90% 지원을 받음. 이에 따라 11~12월 무급휴직 전환 사업장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미 항공업의 지상조업 사업주들은 무급휴직 추진을 진행 중에 있음.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논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고용유지지원금 1.3조, 68% 삭감

-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고용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1.3조, 68% 삭감. 2021년 초 예산에 비해서도 0.8조 삭감. 2021년대비 2022년 지원대상이 4.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예산 감액은 68%인 말도 안 되는 계산법
- 위드코로나 효과의 추이와 항공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회복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조치로, 사업주에게 무급휴직 가속화 빌미를 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삭감, 무급휴직 확대, 퇴사 압박,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방아쇠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삭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전체 사업주에게 더 이상의 지원과 비울상향은 없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음. 대표적 위기 산업인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연말 무급휴직 전환 위기부터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무급휴직 지속)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음.
- 지난 1년 6개월 간, 항공사 2,000여명, 지상조업 4,584명, 면세점 3,628명이 인천공항에서

만 사라졌음. 이러한 위기 추세는 2022년 지속될 전망

- 예산 삭감이 그대로 반영되면, 무급휴직자의 자발적 퇴사(실업급여)를 부추길 것. 심지어 사업주는 그동안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해고 회피노력의 근거로 삼아 희망퇴직·정리해고에 나설 수 있음.

■ 의견

○ 고용유지지원금 795,501백만원 증액

- 정부는 다양한 가정을 통해 과도하게 필요 소요를 과소 추정하고 있음. 특히 기존 데이터의 해당 기간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등 취사 선택하고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부여

<세부산출내역>	
①, ② 유급휴업·유급휴직	
- (지원인원) 유급휴업 111,834명=89,467명×125%, 유급휴직 49,874명=66,498명×75%	
* 최근 1년간('20.7.~'21.6.) 월평균 지원인원(휴업 108,465명, 휴직 80,619명)에 지원연인원 평균감소율 (4.7%)을 적용하여 '22년 예상 지원인원 휴업 89,467명, 휴직 66,498명 산출	
회복기 유급휴업은 활용성이 높아 25% 가중 적용, 유급휴직은 25% 조정	
(지원기간) '21년 상반기 평균 지원개월수(휴업 2.54, 휴직 2.72)에 감소율(4.7%)을 적용하여 연간 예상 지원기간 산출	
(지원단가) '21년 상반기 지원단가(지원금액 총액/지원연인원) 적용: 유급휴업 627천원, 유급휴직 1,482천원	
③ 무급휴업휴직	
- '21년도 상반기 지원단가(1,428천원)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수준 현실화, '18~'19년도 집행액 수준 반영 ('18년 8,499백만원, '19년 8,004백만원 집행)	

- 21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현액에 집행율과 지원대상 감소(4.7%)를 고려하여 필요소요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 방식임

항목	'21년예산액 (A)	집행율* (B)	22년소요 추정(C=A* B*95.3%)	정부안 (B)	증액소요 (A-B)
유급휴업	828,532	51.8	408,950	276,973	131,977
유급휴직	981,653	98.3	919,631	312,650	606,981
무급휴업·휴직	45,062	150.3	64,542	7,998	56,544
합계	1,855,247	78.8	1,393,122	597,621	795,501

*집행율은 '21.7월 말 집행실적이 연말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이는 2021년 당초 예산 편성액(추경 제외)과 유사한 수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1,318,536	810,347	810,347	1,642,249	1,046,594

<보험료지원금 세부 내역>

지원대상	구분	지원 내용	2021년	2022년	증감
일반근로자	지원대상	10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미만, 신규가입 노동자	고용보험39.1만명 연금42만명	고용보험43.9만명 연금47.3만명	4,8,5.3만명 12.5%
	지원금액 (백만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717,472	841,750	124,278 17.3%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최저임금120%미만 신규가입 노동자 (6개월 기준)	<신설>	고용보험18.2만명 연금24.7만명	18,2,24.7만명
	지원금액 (백만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102,470백만원	102,470
예술인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	고용보험 3.5만명	고용보험 1.5만명	△2만명 △57.1%
	지원금액 (백만원)	고용보험 보험료 80%	9,677	3,683	△5,994 △61.9%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	고용보험 43만명	고용보험 17.1만명	△25.9만명 △60.2%
	지원금액 (백만원)	고용보험 보험료 80%	59,443	41,368	△18,075 △30.4%
플랫폼 종사자	지원대상	2개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 및 추가지원직종 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	<신설>	20.1만명	20.1만명
	지원금액 (백만원)	고용보험 보험료 80%		32,901	32,901

■ 문제점

-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는 코로나19 시대 누구나 동의하는 시급한 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그 피해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 4대보험의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것과 함께 가입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함

* 2012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중 10.5%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족한 지원 대상

- 일용직,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저임금 일반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재원을 메우고 있음(2021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39%가 삭감되기도 하였음)
- (일반)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 지원 제외하며 미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고용보험 131만명, 국민연금 143만명에서 대폭 축소되었음.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영세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예술인) 지원자수 산정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2021년 대비 2만명, 57.1%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고용보험외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지원
- (특수고용) 특수고용의 일부 직종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10인 이상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 대상 규모가 25.9만명, 60.2% 축소.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지원
- (플랫폼) 지원 대상이 제한적일뿐더러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지원

■ 의견

- (일반근로자) 10인 미만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3,275,747백만원 증액
- * 30인 미만 기업 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 수 2,285천명(일자리 상생지원금 지원 대상)
- (예술인, 특수고용) 기존 대상 유지(10인 이상 사업장 제외 철회) : 67,567백만원 증액

지원대상	정부예산안	수정안	증감
일반근로자	439,948명*307천원=135,173백만원 472,175명*1,495천원=706,577백만원	2,285,000명*307천원=702,061백만원 2,285,000명*1,495천원=3,415,437백만원	3,275,747백만원
예술인	15,222명*242천원=3,683백만원	35,000명*242천원=8,468백만원	4,785백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1,000명*242천원=41,368백만원	430,000명*242천원=104,025백만원	62,657백만원
합계			3,343,190백만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제사업 리스트

부서	사업	작성자	페이지
국토교통부	광역BRT구축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119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공공운수노조	120

쓰지도 못하면서 과다 편성할 필요 없어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BRT구축

■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정부안
광역BRT구축	5,615,000	14,085,000	15,643,000

- 사업내용: 철도나 도로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문제점

-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제시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사업 진척이 느림
- 2020년 예산 1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56억원(51.6%)에 그침. 2021년 이월 예산이 2억3800만원 가량, 불용액은 50억원 가량으로 예산의 절반 가량이 지출되지 않음
- 2021년 본예산은 141억원 가량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 예산은 전년보다 11.1% 증가한 156억원 가량임
-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착공 예정이던 수원~구로 광역BRT노선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을 비롯해 창원, 부산 등 BRT 사업 역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중
- 해당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단위: 천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정부안	19000000	10643000	2000000	11015000	
국회수정금액	19000000	10643000	2000000	11015000	
결산				5,615,000	

■ 의견 : 사업 집행에 맞는 예산 편성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 현황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새로운 노선 도입에 따른 연내 예상 사업 진척도 등을 검토하여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시철도 노후 시설·차량 개선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3031-332),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3031-351)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108,570	36,911	36,911	74,843	42,915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	113,200	113,200	140,511	68,493

■ 문제점

- 무임수송 손실, 국고 지원 부족으로 노후 시설·차량 방치 : 서울교통공사 사례
 - 무임수송 손실, 월가에 못미치는 운임 등으로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위기 봉착
→ '20년까지 누적 적자 16조 684억원
 - 최근 4년간 노후시설 등 투자필요액은 1조 3,865억원이었으나 투자재원 확보 실패로 6,200억 원(약44%수준)만 투자
 - 그 중 국비는 1,380억원으로 총 소요금액의 10% 수준임
 - 기재부는 1~4호선의 전기·신호·통신 분야로 한정하여 지원 중
 - 시민 안전과 직결된 궤도, 터널구조물 및 5~8호선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적기 시설물 유지보수가 불가
 - 노후시설을 제외한 국비지원은 공기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치중되었으며 안전설비 강화를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음
 - 공기질 개선 사업 관련 : 634억원('19년 313억원, '20년 321억원)
- ※ 국토부는 '22년까지 CCTV 설치하도록 시정명령('21.9.22) → 국비지원은 없음

《노후시설 교체 국비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필요액	13,865	2,875	3,511	3,687	3,792
국비지원액	1,380	383	308	563	126
국비지원율	10%	13%	9%	15%	3%
지원분야	-	신호·통신	신호·통신	신호·통신·전기	전기
실 투입액 (국·시·공사)	6,200	1,277	1,375	2,591	957

○ 위험수준 시설 급증, 시민 안전 위협 : 서울교통공사 사례

-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 위험수준인 C·D등급 비율 증가 추세('18년 평가기준)
 - (1~4호선) 73.8%, (5~8호선) 62.2% → 현시점 성능 재평가시 시설 노후도 더욱 심화
- 향후 1조 6,942억원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투자비 확보 불가로 개선물량 축소 및 사용기간 억지연장 ⇨ 시민 안전위협

■ 의견

○ 국고지원 지원 분야 확대·국비지원을 상향

- 철도시설은 6개(신호·통신·전기·건축·구조물·궤도) 분야가 유기적인 체계여서 일부 분야 자로는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없어 전체 노후시설 교체가 시급

사업명	요청사항		
	지원분야	보조율 상향	경과연수
1~4호선 노후시설 개선지원	궤도·건축·구조물 분야 추가	30 → 40% (10%)	25년
5~8호선 노후시설 개선지원	신호·통신·전기·건축·구조물·궤도	0 → 40% (40%)	25년
노후차량 개선지원	-	25 → 40% (15%)	-

-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의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또는 지원 비율 상향
 - 국고보조사업 매칭기준(국비30%, 시비35%, 공사35% 부담) 일시 적용 유예
 - 국비지원 비율 상향 : (기존) 30% → (변경)40%

○ 법정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 서울교통공사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인 법정무임수송 손실의 국비보전으로 노후시설 투자비

의 안정적 확보 가능토록 지원

<서울교통공사 국비 지원 요청>

(단위:억원)

사 업 명	사업비	요구(안)	정부(안)	중액(건의)
계	15,553	5,842	630	5,758
1~4호선 노후시설 개선지원	1,390	417	176	380
5~8호선 노후시설 개선지원	1,448	434	-	579
노후차량 개선지원	7,812	370	370	222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403	121	84	77
무임수송손실 지원(PSO)*	4,500	4,500	-	4,500

시
민
의

관
점
으
로

분
석
하
는

2
0
2
2
년

나
라
예
산
토
론
회